

속 기 록

- ☐ 회 의 명 : 제 424차 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2026. 7. 31(금) 14:10 ~ 20:14
-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 출석위원 : 이범현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대현 위 원 (인)
김상연 위 원 (인)
문삼화 위 원 (인)
서영수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임영욱 위 원 (인)
진 솔 위 원 (인)
차지언 위 원 (인)

1. 성 원 보 고

이범헌 위원장 : 지금으로부터 제42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주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해 주셨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 예술후원·홍보센터 문지현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네. 위원 11인 중에서 11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 2026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결정의 건,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신규 구성 계획(안),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 등 의결 안건 5건과 2026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1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 등 보고 안건 1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향후 기타 토의에서 기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이범헌 위원장 : 전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송시경 사무처장은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네.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6월 26일에 개최한 제422차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어서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또 7월 14일에 개최한 제423차 서면 회의에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워크숍이 개최되어 상황리에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보고를 받으신 대로 전차 회의에 대한 결과 내용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4. 의 결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러면 접수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결사항 안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 모두 인사말씀을 겸해서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 이후에는 어제 급하게 결정되어 문체부 차관님 미팅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회의를 원만하고 조금 더 회의 중심체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충분한 토의도 해 주시되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요약해서 짧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차관님 미팅을 통해 우리 워크숍을 통한 현안 그리고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현재 민주당 중심으로 민주당 간사가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예민한 용어 정의의 부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 그리고 워크숍 이후 논의되었던 아르코 발전 방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통한 나주혁신도시에서 제2의 아르코 공공기관 이전의 정착 프로젝트, 문화비서관님이 나주 본부를 방문했을 때 논의 사안 등에 대해서 오늘 차관님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여러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밀도 있는 면담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동안 위원님들 중심으로 개진해 주신 여러 의견과 방향이 압축된 부분들은 가감 없이 의논하고 전달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올해는 무더위입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위원님들의 모든 발전, 건승에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에 대해 들어가겠습니다.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216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 임명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박우영 인사소통팀장이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영 인사소통팀장 : 인사소통팀장 박우영입니다. 관련해서 제안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추천위원회를 그간 운영하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추천 후보자 3인 중 적임자를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 제33조 그리고 위원회 정관 28조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얻어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경과를 잠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경과는 사무처장 추천위원회를 5월 22일 구성 완료했고, 공개모집 절차를 6월 17일부터 7월 2일까지 했으며 총지원자는 19인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친 이후에 최종적으로 면접심사 합격자 3인에 대한 추천후보자가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추천후보자에 대한 추천서를 위원장님께 사무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적임자를 지명한 부분과 여기에 따른 임명 동의안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사무처장 추천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처럼 내부위원으로 ○○○ 위원님이 추천위원장이 되셨으며 ○○○ 위원님과 ○○○ 위원님 3인이시고요. 외부위원으로 ○○○ 예술정책과장님과 노조에서 추천해 주신 ○○○ 전 장애인문화예술원 사무국장님이 계셨습니다. 총 5인의 추천위원님이 활동해 주셨습니다.

사무처장 임명 대상자의 약력입니다.

성명은 박범수. ○○○○년생으로 만 ○○세입니다.

이력사항으로는 문화강국네트워크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 경기아트센터 전략사업 본부장과 TF운영 팀장을 역임한바 있습니다.

임기는 저희 사무처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서 임용일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동의안에 최종 의결 확정이 된 이후 저희가 해당 대상자와 임명일 등을 조정하고 취임식을 후속조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보고를 마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최종 5배수에서 3배수로 인사추천심사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셨고요. 심사를 마친 뒤에 우리 위원님 3인과 최종 면담을 하고 3인에 대한 연변순서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것처럼 박범수 후보를 3배수에서 우선 적임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오늘 동의안에 특별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의 찬반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성기숙 위원입니다. 우선 사무처장 임명 절차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훌륭하신 분이 추천된 것 같은데 혹시 위원으로 참여하신 어느 분이더라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진흥법 전면 개정(안)도 있고 과도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분이 사무처장으로서 직무수행에 어떤 점에서 강점이었다고 보시는지 짧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수 위원 : 네.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저희들이 3인을 선정해서 추천을 드렸고요. 3인 모두 예술위의 사무처장 업무를 하기에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경력이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3인의 후보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위의 현안 업무나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인식 그리고 다양한 예술기관에 근무했던 경험들, 경영능력들 그리고 국회나 문체부 쪽과 관련해서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 예술위의 이익이나 예술위 안건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런 것들이 다 있다고 판단해서 3인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이력만 봐도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하나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예술위원회가 50년, 60년이 되었는데 이분이 예술위원회 소위원이나 위원 혹은 자문위원, 연구프로젝트나 정책자문을 하신 이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서영수 위원 : 예술위 근무경력은 없습니다. 제가 이 분을 선정한 것은 아니지만 면접심사 때 이 분이 가진 강점은 직무수행계획서에도 나와 있듯이 예술위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안에 대해 이해가 많이 있었고요. 실제 이분이 활동했던 이력을 보면 국회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술위 관련해서 현안과제들을 입법부와 의논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3인에 대한, 5인에 대한 심층 면접심사를 1인당 PT형태로 약 30분 내외로 면접심사를 위원회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 3인으로 압축해서 3인에 대한 역량은 장단점이 있지만 다들 역량은 출중하신데요. 그중에서 위원장의 선임권한에 의한 최종적인 압축을 한 결과 현 국민주권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취지의 부합과 추진력 그리고 정책과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발전을 위한 충성도, 소명감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저도 검토하고 향후 업무수행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금 ○○○ 위원장님의 말씀처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한 사무처장의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출중한 역량을 가졌다는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 의결이 마치지면 바로 신원조회에 들어가구요. 고위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층 인사검증위원회에서 하지는 않고요. 우리 내부적인 신원조회 심사와 그런 평가조회를 일주일에 거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또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만약에 노파심에서 여쭙보는 건데요. 혹시라도 적격심사에서 부적격이 나오면 예비후보를 선출했습니까? 아니면 재임용 절차를 거치나요?

이범헌 위원장 : 그때는 임시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님들의 결의 사항을 묻고 하려고 합니다. 인사규정에 의한 권한은 사실 위원장이 임명하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면 위원회에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그 절차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 동의안을 결의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로 해서 혹시라도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는 임시위원회를 통해서 재공모를 할 것인지? 3배수로 올라온 분들 중에서 가장 심층 면접과 토의를 거쳐서 2인 중에 1인을 선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긴급 임시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동의안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 합의제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이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해 주시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1217호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고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1217호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행 경과를 아시다시피 7월 14일과 15일에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3개의 소위원회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고 명칭, 실행계획 등은 추후 논의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과 위원별 소위원회 참여 의사를 확인해서 본 안건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3번 소위원회 운영(안)입니다.

임기는 변동이 가능합니다만 저희 규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년 임기로 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소위원회가 열리면 차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요. 소위원회 구성(안) 같은 경우에는 이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각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지원개선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분과를 개설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실지에 대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 구성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안을 정리하면서 당시 김대현 위원님께서도 안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명칭과 운영목표에 대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조정을 한 안입니다. 정책혁신소위원회는 비전 설정 및 정책 개발, 그리고 기관 운영 제도개선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던 제도 부분에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대외 협력 및 유관기관 대응이나 지역 예술인 소통 창구 기능입니다.

예술지원개선소위원회 개선안은 창작 예술 총괄 기능입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소위원회는 기존에 가치 확산, 홍보 및 소통, ESG 및 후원, 메세나를 추가로 해서 왜 기초예술 재원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는 쪽으로 운영목표를 정리했습니다.

이 당시 결정했던 사항은 9기 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을 통해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소위원회 명칭이나 운영목표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은 오늘 의결안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하게 되면 소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같음이 되겠습니다.

간사팀은 현재 3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타 사항으로 소위원회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수정의결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의 향후 계획은 저희가 소위원회 운영 규정 6조에 따라서 외부위원을 항상 유지해도 되고요. 저희 주제가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외부 위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것도 소위원회별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붙임 자료는 당시 위원회 워크숍 논의 구성 결과 보고가 되어 있고요. 13페이지는 논의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이하는 워크숍 2일차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저희가 속기록으로 담은 것인데요. 혹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수고했습니다. 본 설명과 함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원회 구성은 워크숍을 통해서 심층 논의가 있었고 향후 1년을 기간으로 진행하되 중간에 수정·보완할 내용들이나 혹은 조정은 언제든지 위원회를 통해서 결의가 이루어지면 보완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삼화 위원 :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소위원회를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의결을 하고 수정의결을 또 하는 것인지? 오늘 진행 방식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오늘 만약 그 내용이 합의되면 수정의결이 가능합니다. 만약 오늘 논의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별건의 의결안건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저희끼리 논의는 그때 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잖아요. 오늘 그 ...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하면 그 자체를 담아서 수정의결을 하면 됩니다.

임영옥 위원 : 이 부분은 김상연 위원님께서 안건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기 위원회 전체회의 전에 우리 9기 위원회의 비공식이라고 하지만 사전협의를 하고 저는 상당히 좋은 방식으로 인지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심층논의도 해 주셨고요. 거기에서 안건 제안이 있으면 안으로 올려주시고 그 안에 대한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바로 안건으로 부의하고요. 그 부의에 대해서 찬반을 의결하면 절차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기타 토의에서 제안해 주시면, 제안 접수를 동의받으면 안건으로 채택하고 채택된 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한 후에 의결하면 그것으로 결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의의 내용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내용은 기타 토의에서 따로 논의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안에 하나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안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요. 사무처에서 의견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의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 3인이 별건으로 올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다가 3가지 안에 1개를 더 논의해서 그게 확정되면 수정으로 하면 되고요. 별건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발의를 해 주십시오.

김상연 위원 :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끼리 모인 회의에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위에서 역할을 조금 더 세분화 시키는 측면도 있고 그 부분에서는 자생력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에 대해 아르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개발을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임영옥 위원 : 그리고 운영목표로 추가된 것이 지난번 워크숍 때는 예술위 소득보장에 대한 연구가 중장기연구과제로 갔는데요. 그날 차담회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예술생태계라고 했을 때 자생력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당연히 기초적인 활동 여건 보장도 중요한 것이어서 이 소위에서 다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충분히 논의하신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부연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기적인 위원회,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는 9기 위원회 사전 회의는 행정사무 절차상 비공식적이지만 그 회의 때 필요하시면 회의록 정리. 성기숙 위원님도 의견 제안을 해 주셨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공감할 행정적 절차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공식화 할 필요가 있어서요. 회의 주체만 비공식이지 내용에 있어서는 회의록 작성과 그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필요로 하면 사무처에서 그 회의에 간사로 참여

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회의록 정리가 간사를 통해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아니면 위원회에서 회의록 정리를 하시는 자체의 간사를 결정해서 회의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사무처에 접수해 주시면 공식 의제에 채택할 사항이 있으면 의제로 제안 접수를 받고요. 의결사항이 있으면 의결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입니다. 그것이 전원 합의체의 순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런 정책은 정말 대의를 위한 비전을 주시면 언제든지 접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형식의 주체는 그렇지만 내용은 공식적인 기록과 사무처 접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전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영욱 위원 : 짧게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의결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체회의나 의결을 위한 비상회의에서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범현 위원장 :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사무처의 업무규정을 기본으로 거기에는 의결사항으로 의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결하는 내용이 아니라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의논의 결정되었을 때는 의안제안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의안을 제안해서 결정해서 올려주시면 사무처에서 접수하고 그 의안 제안에 대해서 우리 정기위원회에서 의안으로 붙이고 이것을 안전에 부의하자고 과반수 이상 찬성해 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는 절차로 가게 되는 게 공식적인 사무처의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자체 회의를 통해서 의결한 내용이 사무집행의 의결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권한은 갖지 못합니다. 가능하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아까 원래 워크숍 때 3개의 소위원회와 오늘 추가된 것으로 4개를 의결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범현 위원장 : 네. 현재는 그렇게 안전 부의 되었습니다.

문삼화 위원 : 그렇다면 그때 목표, 제목은 결정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지는 결정을 안 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소위원장도 정해야 합니다. 간사팀도 정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간사팀을 정하는 것은 사무처에서 정하고요. 일단 참여하시는 누구인지는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제 의견을 덧붙이면 지금 의결안의 공식(안)은 3가지 소위원회로 압축되어 있었고요. 제안에 따라서 1개가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결의, 동의, 재청을 해 주시면 확정 의안으로 넣고 4개 소위원회로 의결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소위원회 구성과 이런 부분은 후속조치로 하셔도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사무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성기숙 위원 : 성기숙입니다. 소위원회에 대해 논의를 하시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회의에 와 보니까 테이블에 2건의 문서가 있는데 소위원회 구성(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23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향에 대해 제안해 드렸는데요. 이 건과 연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오늘 논의를 하려면, 이게 의원님들과 공유가 되셨을까요? 지금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지? 회의가 끝나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대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 그리고 기존에 정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워크숍 혹은 자체 위원회를 통해서 혹은 문건을 통한 성기숙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접수 의논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의결의 절차와 회의의 진행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결로 진행하고요.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기타 토의 부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만약 심층 논의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음 주나 다다음주에 위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면 임시위원회, 임시위원회는 공식적인 것입니다. 임시위원회를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할 테니까 그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늘 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임영옥 위원 : 그리고 짧게 하나 추가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은 김상연 위원님으로 해서 같이 의결했으면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원래 규정에 따르면 위원님들 중에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정하고 그 위원장을 우리 위원장님이 정하셔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위원장님만 정하기에는 좀 그래서요. 만약 필요하면 수정의결이 아니라 3개만 확정하고 서면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신 다음에 그 부분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수정의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시려고 하면 차라리 어느 분이 하실 지를 정하고 위원장을 정하면 수정의결이 되는데요.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어느 정도 논의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3인의 위원만 우선 임시 의논해 주시고요. 그 3인 중에 1인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추천 결의를 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진행해도 절차상 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서면결의를 하면, 사무 형식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뜰이나 위원회가 중앙정부 기구로부터도 그렇고 독립체가 아니라서 행정 사무처리, 정책 처리에 효율성도 필요한 부분인데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전체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가요?

이범헌 위원장 : 아니요. 추가되는 1개에 대해서요.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에 대해서요. 위원 3인 정도를 배정하시면 거기에서요.

성기숙 위원 : 과거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4개 소위원회는 구성되었고요. 4개 소위원회의 소위원장님도 거의 그때 합의가 된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3개 소위원회였지만 소위원회에 참여를 한다고 했다가 이동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연하고 탄력적인 것은 오늘 의결하고 후속으로 하면 지엽적인 것은 후에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범헌 위원장 :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소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문으로 되어 있지 의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전체회의를 통해서 의결해야만 확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소위원회의 구성 위원님들을 확정해 주시고 논의된 대로 김상연 위원님께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 소위원장을 하시는 걸로 확정하면 4건으로 수정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니까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결의가 된 것으로 접수할 수 있고요. 2인의 위원을 발

표해 주세요. 명단을 주십시오.

김상연 위원 : 임영옥 위원님과 서영수 위원님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시고 싶은 위원님?

성기숙 위원 :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그러면 3인으로 일단 확정하고요.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상연 위원님으로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목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기본소득 등 자생력을 위한 연구 그리고 정책 제안 및 사업 개발로 일단 정리해 놓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지금 성기숙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언제든지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수정·보완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혹시 현안이 있으면 그때그때 현안으로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솔 위원 : 의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소위원회에서 뭔가 이것저것 펼쳐보고 싶은 것은 많았는데 현안이 바쁘고요. 중심으로 다뤄져야 할 것들이 많아서 1년 동안 동참해서 그것을 돕다가 이것이 필요할 경우 1년 뒤에 다시 분과를 만들든지 소위원회를 하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지 사무처에 여쭙고 싶고 위원님들께도 여쭙고 싶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고요. 진행을 하고요. 1년차에 진행된 대로 4개 소위원회로 가다가 추가로 소위원회가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든 위원회 결의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늘 제안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사무처장이 언급을 했는데 소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위원회 결의에서 집행 의결권이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원회에서 결의되어진 것도 안건 제안으로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접수를 받고 동의, 재청이 되면 그것으로 안건 부의를 하고 안건 부의에 대해서 동의를 얻으시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렇고 내용은 같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시고요.

서영수 위원 : 회의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3개 소위원회 중에서 정책혁신소위원회 운영목표 관련해서 지난 워크숍 때 보면 아르코 9기 위원회 비전 설정 및 정책 개발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9기 위원회의 아르코비전을 새로 설정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비전, 미션, 전략과제 등을 새로 하는 작업인 것인지? 이 작업은 저희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포괄적, 총론적 개념이 있어서 더 논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소위원회에서 정책목표나 지표 설정을 한다고 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는 업무분장을 제한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포괄적으로 수정·보완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해 드리려고요. 그리고 전략적 9기 위원회의 정책방안과 이런 방향은 꼭 거기에서 도출되어져서 결과를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유연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아까 위원장님 말씀에 대한 보충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사전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공

식적인 회의로 다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간담회와 소위원회의 성격이 섞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소위원회 형식으로, 전원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간사부서나 회의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렇게 공식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 더 의견을 덧붙이는 부분은, 이 소위원회가 출범해서 가동이 되더라도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는 전문위원이 있다.”라고 하면 1~2인 정도는 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추가로 소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진행해 보니까 “여기에는 내가 조금 더 관여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다.”라고 하면 이동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모두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회의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것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서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됩니다. 김대현 위원님이 정리를 하면서 네번째 줄인가요?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일종의 정책혁신소위원회로 변경해서 이 부분에서 아르고비전을 설정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 쪽에서 빠지는 부분이 미래전략소위원회에서 다시 흡수하면서 미래전략소위원회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할 때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가 기존 말씀에서 “예술 지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비전전략 부분은 애초 기관경영기획소위원회로 올렸을 때 거기에 대한 정책혁신소위원회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영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서요. 지금 안건은 정책혁신소위원회에서 저희 기관전략, 비전전략 체계를 담당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셨던 과제도 점검하고 지역예술인소통도 하고 외부 대외기관에 대한 대응도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차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수정의결된 것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가 명칭입니다. 그리고 간사팀은 의결안건의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추후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소위원장님은 김상연 위원장님이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은 임영옥, 서영수, 성기숙 위원님으로 정리를 해서 수정의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요약 정리된 대로 정식 의결안건으로 채택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김대현 위원 :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정리할 때 아르고 9기 비전이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2030생태계 등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9기 자체의 고유한 방향성을 제안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자료 14쪽부터 16쪽까지 나와 있는 발언 내용을 정리하신 게 소위원회 이후의 회의기록이라고 했는데요. 시점이 언제 것인지, 제가 볼 때 많이 누락된 것 같아서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15일. 위원님이 가신 다음에 15일 오전입니다.

성기숙 위원 : 네, 이해했습니다. 연동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회 첫날 14일은 참여를 하고 15

일은 저의 개인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되었고요. 후속으로 문삼화 위원님께서 위원들 단독에 3개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된 것을 사무처에서 공식적으로 정리 해서, 위원들이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문자로. 그것이 어떻게 통폐합되고 어떤 취지로 되었는지를 저는 알고 싶었는데요. 2번과 3번에 참여한다고 답변은 드렸어요. 저한테 개별 문건이 왔는데 제 취지는 이런 것들은 “공식화를 하자.” 이것은 제가 7월 23일자로 위원회 운영방식 3가지를 제안 드렸고 7월 24일 2시에 사전회의를 4시간 정도 진지하게 논의했구요. 그때 모든 회의는 기록이 남고 공식화를 해서, 왜냐하면 문삼화 위원님이 너무 수고를 하시니까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전 준비 자료도 있고 논의하는 것도 공식화해서 기록으로 남아야 되고 후속 조치도 되어야 하잖아요. 회의 결과가. 그러면 어차피 사무처의 어떤 부서가 될지 간사 담당자가 붙어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를 그때 사전회의때 제안해서 공식화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4개 안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서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입니다. 서영수 소위원장님의 영도력(?)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각 4개 소위원회 중에 개별 안건이 있을 때 관심이 있으면 문삼화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도, 그 부분도 저는 관심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개별 주제가 있을 때는 참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범헌 위원장 :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 요약해 주신 셈인데요. 그동안 있었던 위원님들의 의견 혹은 공식, 비공식의 제안을 사실상 귀담아듣고 위원장으로서 사무처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 지침을 주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반영하는 종합적 정리가 결국 의결의 집약된 겁니다. 지금 잘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에 대한 충분한 반영과 논의의 결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런 효율적인 제안들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충분히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은 충분히 공감이 되었다고 보고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진솔 위원 : 의견은 아니고요. 생태계에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사무처에서 접수해 주십시오.

진솔 위원 : 제가 거기에서 해 보고 싶은 것은 청년 관련해서 이러저런 이슈가 많은데 청년과 원로를 같이 묶어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생태계에서 같이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위원장님께 여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괜찮죠.

김대현 위원 :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에서 기본소득과 자생력이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에서 예술가를 써보자. 지난번에 비서관께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 논의를 사후적으로 추가시켜달라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넣어주십시오.

이범헌 위원장 : 알겠습니다. 일단 문건 요약으로 사무처에서 그렇게 요약해서 접수를 해 주시고요. 소위원장님은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사항이 있을 때는 얼마든지 회의 이후에도 진행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무처에서는 항상 의견접수를 하도록 열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계속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혹은 객관, 주관적인 것을 포함해서요. 그러나 소홀히 하지 않고 9기 위원회에서는 담아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9기 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논의된 숙원들이 사실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결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제안에서 이런 최종 의결이 되기까지는 성기숙 위원님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사무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사항이 있으면 향후 조금 더 보완적으로 사무처에 언제든지 제안이나 의견을 주십시오. 최종으로 묻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김대현 위원님이 참석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대현 위원 : 네.

이범헌 위원장 : 접수가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말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의 정책과 아르코 9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이라는 전제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토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대로 3가지 의견에서 제안되어진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에 대해 김상연 소위원장님을 기준으로 하고 위원님들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의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이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해 주시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이상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의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번호 제1218호 2026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술인재양성팀 왕우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건은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결정의 건입니다.

3번 주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2026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결정건수는 총 38건이고요. 43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결정금액은 2억 4,294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9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번 주요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사업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는 연수단원지원사업 참여자의 정규직 고용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 또는 채용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사업예산은 2억 4,300만 원이고요. 지원내용은 고용전환 인력의 2026년도 하반기 임금의 일부를 지원 하게 됩니다. 1년차에는 저희가 6개월 이상 정규직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 단체에 1인당 최대 월 1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고요. 2년차에는 1년 이상 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단체에는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6월 17일부터 7월 3일까지 17일간 지원신청을 받았습니니다. 지원신청 접수결과 55건에 65명에 대한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심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21일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에서 지원심의를 추진했고요.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후보단에서 적격자 지정 방식이었는데요. 정규직고용전환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께 후보단 추천 방식이 아닌 정시공모 때 연수단원 심의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 중에 저희가 랜덤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원님들을 지정해서 총 장르별 심의위원 5인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노무 전문가 1인으로 해서 총 6인이 섭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인이 아래 표에 있는 대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심의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전 행정검토는 사무처에서 진행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실적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들께서 근로계약사항 70%, 예술인력운영현황 30%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원대상 선정에 대해서 사전토론, 사전에 전수검토로 서류 심의를 하였고요. 심의위원 개별채점을 했고 결과 집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원심의 결과 총 38개 단체 43명이 선정돼서 2억 4,300만 원의 예산에서 2억 4,294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결과를 24페이지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결격은 2개 단체만 있었습니다. 2개 단체의 행정결격은 필수서류 미제출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 심의결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심의위원들이 장르별로 심의를 한 게 아니라 통합된 서류를 다 보셨기 때문에 장르별 심의가 이루어진 내용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별 비중 그리고 장르별 비중도 표로 보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3페이지를 보시면 지원심의 결과 발표를 오늘 의결해 주시면 8월 3일 월요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요. 8월부터 12월에 인건비를 7월분부터 소급해서 저희가 단체에 교부하게 됩니다.

24페이지부터는 말씀드렸듯이 장려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이상 세부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연 위원 : 팀장님, 지금 선정단체나 신청단체의 숫자에서 전통부문이 두 번째 정도가 되는 것 같은

데요. 심의위원들 분야에는 전통이 좀 안 보여서요. 혹시 전통분야의 위원들이 안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희가 정시공모 때 전 장르의 심의위원들이 다 들어가십니다. 정시공모 때는 숫자가 워낙 많기때문에 전 장르 심의를 다 하는데요. 정규직 고용 전환 심의는 건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까지 전 장르 위원님들을 해 놓고 저희가 섭외 순위대로 시스템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의건수를 보면 총 55건인데 이렇게 되면 5인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위부터 5위 안에 전통분야의 위원님이 들어갔는데 섭외에서 전통분야 위원님은 시간이 안 되셨던 겁니다. 문학, 전통이 빠진 거죠. 그것은 섭외순위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장르 심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겼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상연 위원 : 네. 그래서 여쭙본 것은 아니고요. 빠져 있어서 여쭙본 겁니다. 설명은 충분히 됐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설명을 충분히 이해되게 했습니다.

임영옥 위원 : 21페이지에 조건부 지원결정이 된 5개처가 있는데요. 심의결과 발표는 오는 일요일이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월요일이요.

임영옥 위원 : 그러면 주말만 남은 상태인데 이 사이에 받아서 검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발표를 먼저 하고 뒤에 보완을 하는 것인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네. 조건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단체들이 노무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전문가만큼 많지가 않아서 정규직 계약서에 약간 못 미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그 서류를 보완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조건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술단체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이라서 장려하는 차원의 장려금이기 때문이에요.

임영옥 위원 : 그래서 결과발표는 하고 추후에 보완을 하는 것이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네, 맞습니다.

임영옥 위원 :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일종의 서류 보완 형태라서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단순질문과 제언 비슷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1년차와 2년차가 있는데 최대 120만 원과 60만 원으로 지원규모에 편차가 있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는 심사를 심의위원 풀에서 하되 통상적으로 계기성지원이든 정시공모든 비상임위원과 사무처가 심의위원 추천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왕우리 팀장님의 설명으로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비상임위원 미추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향후에는 비상임위원 미추천으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것도 한번 가이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이니까 이 지원사업의 성격으로 보

면 굳이 장르 안배는 아까 말씀처럼 필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에 노무사도 들어오셨잖아요. 무엇보다 이것은 통합심의로 가더라도 행정검토 영역을 밀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거야말로 사무처 전담심의관이든 아니든 이런 행정검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과감히 참여해도 좋겠다는 말씀을 제언해 드립니다.

또 하나 21쪽을 보면 조건부 지원결정에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전체회의에서도 그렇고 재교부 문제인데, 전문무용수지원센터가 민간 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수년간 재교부를 하고 있고 2026년에 13억을 재교부했다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창호 팀장님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흔쾌히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10억으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을 또 조건부로 지원하게 되는데요. 조건부 지원결정을 한 이유 내지는 조건부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나요?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네. 먼저 1년차와 2년차에서 금액이 차등인 이유는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단체가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1년차 지원 단체를 더 장려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고용전환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2년차도 1년차와 똑같이 지원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조건부 지원이라는 게 계약서상에 정규직 계약서가 갖춰야 할 양식을 미준수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한 다음에 행정 양식이 지켜졌을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이라 수용하려는 입장입니다만,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경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수단원사업의 경우, 사실 저희는 연수단원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연수단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어쨌든 예술계에서 계속 일자리로서 질 문제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일하고 싶은 직장이 어딘가를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조직으로서 규모를 갖춘 곳. 그리고 시스템이 괜찮은 곳을 전문가들에게 심사해 주십사 했고요. 점수를 좀 높게 받은 곳을 저희 사무처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누락시켜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이것 관련해서는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왕우리 팀장님께 별도로 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범현 위원장 : 네. 회의 이후에 그런 의견은 사무처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중한 논의를 하면서 점수를 함으로써 발전적인 객관화가 되면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시면 표가 있잖아요. 지원결정 현황에서 음악장르와 문화일반이 현저하게 선정 %가 낮아서요. 그 이유가 뭔지를 여쭙보고 싶어요. 서류가 미비한 것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점수 차원에서 순위를 결정했는데 특별하게 재논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했을 때 장르심의를 한 것이 아니니까 장르 안배 차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여기에서 진행이나 이런 것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점수?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네, 맞습니다.

서영수 위원 :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수단원 지원사업 대상이 민간, 국·공립 예술단체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죄송하지만 ‘국’은 오타입니다. 국립은 빠진지가 좀 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공립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국립은 빠진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서영수 위원 : 25페이지를 보시면 지원받은 단체들 리스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27번에 ‘○○○○엔터테인먼트’, 30번에 ‘□□엔터테인먼트’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은 주식회사인 경우도 제법 있고요. 그래서 이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예술단체인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필수서류 미제출로 안 된 ‘●●문화재단’과 ‘■엔터테인먼트’가 있는데요. 여기도 서류가 다 되었으면 됐을 것 아닙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서영수 위원 :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래서 전문가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순히 행정심의보다는 전문가들 심의가,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꼼꼼하게 봅니다. 추가 서류를 위원님들께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했는지? 어떤 작품을 하면서 순회를 돌더라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점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하루에 몇 회씩 돌면서 연수단원이 기계적으로 소모되는 회사인지? 그런 회사들은 웬만하면 배치를 안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불식시키고자 심의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많이 미비했습니다. 실제로 서류를 잘못 내셨더라고요.

서영수 위원 :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 같이 큰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 예산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의 지원금 신청을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술위의 고유한 미션이나 역할을 보자고 하며 기초예술이나 진짜 예술단체들에게 인력을 양성시키고 키우는데 지원해야 하는데요. 광역 또는 큰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술단체의 경우에도 무슨 엔터테인먼트가 구체적으로 무슨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인지? 또 주식회사 이름을 달고 있으면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초예술단체들은 4대 보험을 줄 형편이 안 되니까 아예 이런 사업에 신청도 못 하고요. 신청하고 싶어도 이런 정보를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많이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서 이런 방식의 지원방식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예술단체에 적합한 새로운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을 좀 찾아봐야 되는 게 아닌지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맞습니다. 중요한 의견을 주셨고요. 위원회에서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고유 업무로서 중요한 영역이어서 앞으로 이런 지원업무 제도에서 정량적 평가의 매뉴얼 또 정성적 평가를 전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 혁신안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조금 더 논의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화하는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접수를 사무처 담당부서에서는 해 놓고 향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서는 이런 계기에 이런 공모제 심

사 방안 그리고 지원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논의가 향후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길어져서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할게요. 아까 왕우리 팀장님이 심사를 맡으신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존중했다고 하시는 게 뭐냐 하면, ‘◇◇◇◇’가 ☆☆☆ 씨가 하는 곳입니다. ◇◇◇으로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본명이고요. ◇◇◇◇가 최근에는 상업적인 것을 많이 하지만 연극학교를 거의 14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익적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상업적인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이름을 붙인 것은 최근이고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그 전에 ☆☆☆씨가 기여한, 연극학교를 10년 이상 이어온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런 점이 높이 평가되었을 겁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맞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문모 위원 : 서영수 위원님의 코멘트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논의를 하시겠지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리단체의 고용에 대한 것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맞는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 접수를 사무처는 꼼꼼히 해 놓으세요. 그리고 향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팀장님께 좀 여쭙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8기에 문학이 없다 보니까 문학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보다 보니까 연수단원 재임용 신청을 한 단체에 문학이 없어요. 이 경우 신청 자체가 없던 것인지? 아니면 문학단체 부분이 원래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선정 이력들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 출판사도 있겠지만 계간지나 문예지를 발간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 지원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신청 자체가 굉장히 저조한 측면이 있는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몇 년치 자료를 보시면 훨씬 심각성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대현 위원 : 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출판 인력 연수단원 같은 사업은 출판산업진흥원에서 따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네.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현 위원장 : 조금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왕우리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사무처에서는 필요한 자료를 그때그때 열람 또는 공개해 드리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언제든지 요청이 있으면 그런 자료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김대현 위원님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문예지 지원을 받거나 문학전문출

판사에서 연수단원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적고요. 그러니까 도서출판 ◇◇◇나 이런 쪽에서는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문학관 같은 경우 ‘대구■■■■■■■■’ 같은 곳에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학관 전문인력 사업이나 출판인력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연수단원 사업으로 많이 수렴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9기 때 홍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여러 장르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라서 좋은 의견과 현장의 현안들을 잘 짚어 주시고 계시고 향후 그런 부분들을 발전적으로 접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면서 시각예술은 저 하나라서 늘 정책의 모든 부분이 시각은 제가 다소 보류하고 의견도 가능하면 사무처의 업무현안을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하게 위임하는 편인데요. 저도 능동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하나의 성과를 위원님들께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으로서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아르코, 지금 논의되는 사항들과 기존에 제가 조금 눈여겨 본 것 중에 성기숙 위원님이 제안을 일부 해 주시고 현장 매거진 그룹들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여러 가지 조탁을 떠나서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제한적인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골고루 지원이 들어갈 수 있고, 지원의 기회를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 이것은 고용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비평창작예술 쪽에서는 전 분야에 걸쳐서 미약하기 때문이에요. 시각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악, 무용 다 그럴 것이고요. 전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취약한 부분이, 특히, 선진국형 문화예술 생태계에서 미흡한 부분이 비평, 평론, 서지학적 관점. 지금 아카이빙이라는 말로 요약해 버리기는 하는데 자료적인 포괄성보다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앞으로는 비평과 평론 그리고 사적 가치에 대한 부분, 포괄적으로는 말 그대로 아카이브 정책을 통한 기록보존과 발전의 토대로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 지원체계를 열고 조금 더 확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각예술에서는 후원 개념, 문화예술위원회가 메세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회를 구성해서 홍보·후원센터에서 포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좋은 사례들도 있지만 아직 미흡하고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문학집필지원 개념에서 호텔이나 혹은 기업에서 후원하는 게 2~3가지 샘플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각예술 쪽을 포괄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위탁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케이트갤러리 관장님. 지금 메트로폴리탄 동양인 도슨트 실장을 20년 이상 계속 해오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뉴욕 한인미술가협회 회장 그리고 알파운데이션 이사장에 최근 취임하신 케이트 관장께서 한국인이시고 고향이 전남 담양이신데 기존에 제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나 공공적인 시각예술을 진행할 때 펜션이 하나 있는데 그곳을 갤러리로 리모델링해서 담양지역 작가들과 전남 그리고 전국구 작가들이 계속 전시기획을 하다가 제가 임기를 마치면서 소강되어진 것을 펜션 층에 맞게 펜션으로 운영하다가 운영이 어려워지고 더 할 분이 없고 뉴욕에 거주하는 분이어서 상속 받은 펜션 갤러리를 저한테 개인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활용으로 무엇이든 쓰기를 제안해 주셔서 저는 그것을 공식화해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고 심지어 장소를 임대료를 주면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협의체에서 이상이 없으면 10년, 20년 장기 제공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그것을 통해서 제가 담당부서에 MOU 협약 형태로 해서 우리 레지던시 프로그램. 또 한편으로는 문학창작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도 되는 공간이어서요. 2층짜리로 시골 펜션으로는 조금 고급스럽게 이미 갤러리로 운영해서 담양 군수님과 개관전도 했던 장소라서 그곳을 아르코에 무상기증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MOU 협약안으로 해당 본부장과 예술홍보·후원센터장과 급하게 기본적인 안을 주었고 포괄적으로는 사무처장과 경영기획본부장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국내, 국외의 미술가 레지던시 혹은 문학창작집필실 등 우리 사업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그 공간은 완전 무료로 저희들이 운영권과 레지던시 집행권을 모두 가지고 협약 초안을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이러한 메세나라는 개념도 조금 더 새로운 각도에서 연간 회비를 내는 후원도 중요하지만 여러다각적으로 아르코다운 메세나 유형을 만들고자 한다는 보고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여기까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제는 의사 여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이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해 주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1219호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신규 구성에 대한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이상희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지원총괄팀장 : 지원총괄팀장 이상희입니다.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후보단의 임기가 10월 16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2027년도 심의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서 후보단을 전면 재구성하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6월부터 지난 워크숍까지 논의를 이어왔고 워크숍 당시 모집 그리고 선정, 선정위원회 구성 방법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신규 구성 일정(안)입니다.

다음주 8월 5일에 모집공고문이 나가고 접수는 시스템 개선 진행 중이라서 8월 10일부터 26일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이후 9월에 장르별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10월 말에 후보단 선정 전체회의 의결 예정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후보단 모집 시 자격 기준을 유연화 하고자 합니다.

지원심의운영규정에 따라서 경력 10년을 원칙으로 하되 예술생태계는 실질적 전문성과 활동 실적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특히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최근 5년 내 주요 수상 실적이나 탁월한 현장 영향력을 갖춘 경우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서 청년과 지역전문가를 적극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부 구성 전문분야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하며, 이는 워크숍 이후에 장르별 위원님들과 사업팀 간 협의결과를 반영해서 붙임1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하는 분야만 말씀드리면, 문학 분야에 국제/번역, 출판/편집 그리고 연극/뮤지컬 분야에 연기를 신

설하고 전통예술 분야에 극작/연출을 신설하고 다원예술을 독립적인 장르로 구분해서 전체 8개 장르 53개 전문분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전문분야는 본인이 신청 시에 선택하게 되는데요. 1인당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 장르 안에서 전문분야 작곡/지휘로 선택하거나 연극의 연출, 전통예술의 연출 등 이렇게 2개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자기추천과 대국민 공개추천을 병행해서 숨은 인사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결과적으로 본인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 접속해서 본인의 상세 정보를 등록해야지 신청 완료가 되는 것은 같습니다.

대국민 공개추천 방식은 추천인이 피추천인의 이름, 장르, 연락처, 추천사유를 제출하면 사무처에서 피추천인에게 직접 신청 링크를 발송해서 후보단 신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후보단 검증을 위한 선정 방법입니다.

선정 절차는 먼저 사무처 행정검토를 통해서 자격 요건을 먼저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공정행위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이후 장르별 선정위원회에서 전문성, 공정성, 현장성 기준에 대해서 개별 검토 후 통합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고, 결정된 인사들에 대해서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서 예술인 권리침해 해당 여부를 확인 후 후보자를 확정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 그리고 결과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장르별 선정위원회는 비상임위원 1~2인 그리고 외부위원 4~5인으로 총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외부 선정위원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신청한 사람이 외부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 인사들의 경우는 장르별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확정하는 안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워크숍에서 결정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해당 신청자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후보단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간 심의 참여를 제한할지? 아니면 2027년 공모 심의에도 참여가 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오늘 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선정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넘어가고 뒷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규 구성 후보단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임기를 3년 적용하고 부족한 경우 매해 충원을 하거나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해서 후보단을 재점검하고자 합니다.

후보단 구성 결과는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자에 한해서 국가문화예술시스템을 통해 지역재단이나 지자체의 전문가 풀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논의도 있었고요. 향후 추가 의견은 늘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선 의견이 있으면 먼저 듣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아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외부 선정위원의 경우 1년간 심의참여를 제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굳이 적격자로 판단된 분을 굳이 1년 간 회피나 기피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의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삼화 위원 : 동의합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이 의견에 대해서 동의도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주고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윤희 예술지원1본부장 : 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그렇게 해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김대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공식적으로 수정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도 해 주시는 거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의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수정한다는 의결이 동시에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를 조금 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성기숙 위원 : 우선 지원총괄팀에서 새로 구성하게 돼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겠는데요. 심의후보단 구성에 대해 제가 6월 25일 4쪽짜리 의견을 드렸는데요. 회의자료를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에서 객관적 기준과 전문성 다각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장르나 지역선별, 세대 등을 균형감 있게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요. 특정 학연이나 인맥의 편향성을 해소해서 객관성, 합리성이 검증된 인사로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현장 전문가 중심의 독립무용가, 국제교류전문가, 지역전문가 그리고 청년지원 같은 경우 청년전문가. 그래서 저희가 지역 별도의 지원트랙도 있고 청년 별도의 트랙도 있어서 지역이나 청년을 심사할 때는 청년이나 지역의 심의위원 안배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니까 무용 분야는 기존 분야를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지원총괄팀장 제가 볼 때 조용주 팀장님이 있는 공연팀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김상연 위원님과 임영옥 위원님께 전통무용 관련 심의위원 풀에 대해 협의를 하자고 하고 못 했던 것 같은데요. 뭐냐 하면 국악진흥법이 제정되었거든요. 국악진흥법이 제정돼서 국악진흥법이 정의내리고 있는 것이 전통음악, 전통연희, 전통무용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한 전통 분야와 무용의 심의위원 풀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별도 논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2024년 9월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기존 심의위원 풀 중에서 미투 관련자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해서 일부는 구제를 했고 일부는 그대로 존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소속의 유력 극장장 같은 경우는 구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심의위원 풀에 복권이 되었는데요. 무용 분야 같은 경우 배우자가 미투에 걸렸는데 시간도 꽤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 무용가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의견을 드렸는데 그때 구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후로부터 2년이 경과해서, 당사자가 아닙니다. 미투의 당사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미투 관련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구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것은 구체적인 사안들이니까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심의제도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전반적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실무 본부장님 관련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윤희 예술지원1본부장 :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정위원회 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리고 또 논의하시기로 한 그런 부분을 더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안을 주시면 가능하면 매뉴얼에 반영되는 심의제도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지연 위원 : 지난번 워크숍 이틀째에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는데요. 저희 전통춤을 성 위원님께서 “전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는데요. 국악이 가무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통춤은 무용에 속해야 그 자리에서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해까지 전통 분야에서 무용이 어떻게 지원되는가를 살펴본 결과 무용은 1건도 지원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전통춤도 무용 안에서 포괄하고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런 현안도 중요하고요. 혹시 이 의견에 부연하실 분이 있습니까?

성기숙 위원 : 전통무용 분야는 지원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길게 논의가 될 것 같아서 전통분야 위원님들과 공연팀장님이 같이 별도 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런 방안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시고 안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수 위원 : 지금 차 위원님 말씀하신게 지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어떤 케이스냐 하면 지역에도 무용 지원 분야가 있고 전통 지원 분야가 있는데요. 무용 지원 분야에서는 전통춤을 지원 안 합니다. 아예 창작 중심으로 지원을 해 버리고요. 무용 안에서 소위 말하는 한국무용이라고 하더라도 창작만 지원하고 전통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은 거의 못 받고요. 그러니까 전통 분야에도 지역에 춤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전통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위 자체가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구체적인 연장의 의견은 부연해서...

성기숙 위원 : 지역별로 편차도 있으니까 데이터를 갖고 얘기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확장 개정이 돼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게 많고요. 국악진흥법도 제정돼서 지방마다 지자체에서 조례를 굉장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무용가들이 그런 정보에 어두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유산청에서 전통 분야는 커버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해 보죠.

이범헌 위원장 : 지금 현안처럼 현장에 많이 알려주시는 것도 우리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요. 그래서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라는 센터의 시스템을 조금 더 정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홍보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형유산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국가유산청 쪽에서 보존, 계승하기 위해서 국가유산보호기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 계승하는 부분은 예전에는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 부분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창작하는 것은 한국춤으로 분류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혼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논의를 하셔서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할 것인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할 것인지 부분을..... 각 장르도 똑같습니다. 연회를 어떻게 볼 것인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논의를 새롭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맞습니다.

성기숙 위원 : 사무처장님 말씀이 맞는 게 오리지널 순수 전통 무형유산 개념입니다. 이것은 국가유산청도 있고 전통국악원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도 있어서 우리가 만약 한다고 하면 전통을 소재로 한 현대화 작업을 하는 창작. 이것은 좀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논의가 필요하고요. 지금 성기숙 위원님 말씀대로 국악진흥법이 3~4년 전에 제정이 국회 통과가 되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 관련한 부분들의 법안들이 사진진흥법이 통과되었고 건축진흥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르코가 담당하고 관여할 수 있는 장르적인 분야가, 분야별 진흥법이 거의 완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하는 조례가 2년 정도 걸리고, 이제 막 시행하는 것이니까 말씀처럼 조금 더 선도적으로 위원회에서 의논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런 안을 사무처에 제안 접수해 주시면 우리는 실행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하기 전에 마무리 의견을 들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 장르별로 기획, 제작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음악 장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심사위원 풀에 기획사 사장님들 성함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처음 와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큼니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고 했더니 “3년 동안은 못 바꾼다.”라고 해서 이번이 기회거든요. 그런데 공고에 “기획사는 안 된다.”라고 낼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기획·제작이 본인들의 전공 분야라고 해서 들어오면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이범헌 위원장 :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것. 퍼블릭하게 공익적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더 세밀하게, 매뉴얼화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는데요. 본부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 예술지원1본부장 : 선정위원회에서 이분이 정말 기획사의 기획만 하는 거라고 하면 선정이 안 되는 것으로 하면 되거든요. 음악의 기획과 시각 쪽 기획은 좀 다른 내용이기도 합니다.

왕치선 위원 : 몇 분은 음악 쪽에서만 활동하시고 실은 우리 예술위원회 음악 장르에서 가져가는 돈의 절반 가까이 그 기획사를 통해서 서류들이 작성되고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분들을 뽑았는지도 의문일 정도입니다. 특히 다른 장르와 달리 음악 쪽은 기획사를 통한 서류 작성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는데요. 이분들이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씩 받아가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왕치선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면 우리가 2024년에 창작소통소위원회에서 심사위원 풀을 보완할 때 그 얘기가 기억나는데요. 음악 분야는 기획사가 굉장히 많았고요. 무용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어서 아까 본부장님이 선정할 때 한다는 말씀도 맞기는 한데요. 새로 접수를 받잖아요. 그때 가이드라인도 어떻게 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심층 논의를 해 주시고요.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모에서 그런 제안사항이나 규정사항을 보완해서 공모부터 할 부분. 또 심의에서 반영할 부분을 구분해서 밀접한 내용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의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 없으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해 주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의견에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는 것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반영되었으니까 수정의결로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추가 논의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결이 되었더라도 내용에 대한 보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면 삼청까지 수정의결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220호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원회 지정교부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조용주 연극무용팀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주 연극무용팀장 : 안건을 설명드리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보조금 운영관리 규정 제9조(보조사업자 공모)에 의거하여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사업 지정교부 대상에 대한 선정 및 지원액을 확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위 창설 또는 주최, 운영주체 대체 불가, 지자체 매칭 등 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예술위 의결을 통한 지정교부, 이전 지정교부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2027년에서 2029년 다년지원 여부 및 그에 따른 예산액을 확정하는 사안입니다.

지정교부 검토 대상은 아래 표의 3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와 지정교부방식 진행 경과는 전차 회의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정교부 대상 사업 개요입니다.

최근 몇 개년 간의 지원 이력과 2025년도 평가 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교부의 추진 필요성 내지는 사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창설·주최한 장르 대표사업으로서 역사성과 공공적 책무 부분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연극제 그리고 전국무용제는 문화예술진흥원 시기부터 각 장르 대표협회와 예술위원회가 공동 창설·주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45쪽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창설·주최한 국가대표 공연예술사업으로서 공공성과 장르 대표성 그리고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하여 2019년까지 지정교부 방식으로 지원하였고 이후에 공모제로 전환됨에 따라 다년간 지정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관단체의 대체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지역 예선 운영체계를 갖춘 장르 대표협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전국 단위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체 주관단체가 사실상 부재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및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운영상 다년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는 광역지자체 중 개최지 선정, 지자체 매칭예산 확보, 지역협회 참여, 지역별 예선 등 운영의 사전준비부터 본행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행사입니다. 국제공연예술제 또한 해외 협업 등 최소 2년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한 지정교부에 대한 검토를 여쭙고자 하는 바입니다.

5번 지정교부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건에 대해 2027년에서 2029년에 대한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을 받아 별첨 자료로 드린 바 있습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15억 증액을 요청하였고, 대한민국연극제는 6억 8,5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전국무용제는 증액 요구가 없었습니다.

지정교부의 취지에 따라 확정시 지정사업은 향후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정시공모 시 다중지원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 의결 시 예산도 같이 확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주요 증액에 대한 자료는 48쪽에 요약된 자료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약 10억 증액에 대한 내용이고, 대한민국연극제도 6억 8,500만 원에 대한 증액 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지정교부 여부 및 그에 따른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조용주 팀장의 보고를 마치고 이 내용에 대한 논의도 상당한 논의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토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거수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나중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이 나오기는 할 텐데요. 1번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부분. 2번과 3번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잖아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운영주체가 향후 아마 예술산업진흥원으로 되면 이것이 산업적인 건지 기초예술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결정 권한도 없는데 만약 우리가 교부를 한다고 하면 기초예술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 조금 있으면 그 쪽으로 넘어가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위원회에서 많이 논의를 하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안 내용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부터 상당한 공론화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제적 준비를 이미 사무처에 시키고 있고요. 또 문화비서관님이 나주 본부 방문 시부터 공개하고, 오늘 제가 차관님을 만나는 주요 사안 중에도 지금 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안을 반영하는 미팅이 함께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발의된 내용에 기준을 놓고 우리가 정책 결정을 참고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관점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결의된 이후라도 그렇게 진행되고요. 실질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문화예술 그러니까 문화를 빼고 예술산업진흥원으로 간다고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시행하는 시기는 몇 년 걸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유 업무 진행에 대해서는 하되, 그리고 법 제정이 이루어지면 실행 시기에 맞춰가면서 하는 선제적 준비는 지금부터. 지금 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논의를 소위원회를 통해서 면밀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 위원회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다각도로 준비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의논은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왜 예술위원회가 중요하나 하면, 김상연 위원님이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를 책임 지시잖아요. 우리 예술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면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산업진흥을 포함하여 생태계연구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아마 전체를 못 아우를겁니다. 예술위원회가 예술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고 하면, 전체적인 예술생태계에서 예술산업진흥원에 있는 업무까지 조정할 수 있는 책임이 없으면, 생태계 연구는 우리 쪽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예요.

이범헌 위원장 : 네. 중요한 의견이신데요. 그리고 또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만약 최종 확정돼서 그것이 결의된다면 수십년 동안 손을 대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과 관철해야 할 사안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그 준비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예술단체나 창작예술 분야의 연합체와의 연대도 필요해서 미리 제가 지난주부터는 현장 논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방향성과 입장에 적극 동조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런 유기적인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지금 구 위원님이 강조해 주신 것을 뒷받침합니다. 그렇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옥 위원 : 지정교부와 관련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2개 단체에 대한 지정교부 논의를 계속 들으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왜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취지는 살리면서 반복되는 논의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이죠. 그리고 우리 회의 문건에서도 “국가대표 공연예술제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창설하고 지원육성을 해 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창설하고 우리가 육성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상 내용을 이제는 기획하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죠. 그냥 사후평가만 하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할 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축제가 애초에 표방했던 공공성, 정책적 성격을 조금 보완하거나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장치만 마련하고 오히려 그런 당의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협회가 협회 내부에서 추진위나 운영위를 꾸려서 가는 것들. 거기에 조금 개방성을 부여한다는 방향으로 미리 지원조건을 제시한다거나 그 부분에 있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중요한 의견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먼저 그런 보완적인 측면. 혹은 필요로 한다면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주체에 그런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결의된 부분의 일정 정도는 정책적, 간섭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 보완 혹은 자문 차원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더 논의하면서 보완책을 찾고 지원하되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의견들을 반영하면서 혁신적인 것으로 점차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문삼화 위원 : 지정사업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제가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결국 이 혜택을 누가 받느냐가 저의 초점입니다. 이 사업, 이 기금으로 해서 누가 이것에 대해 혜택을 받고 가치 창출을 더 할 수가 있는냐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연극제가 지난 일요일에 폐막을 했습니다. 경남 진주에 있는 극단 현장은 50년 역사인데요. 이번에도 금상을 받았어요.

1997년에는 대통령상을 탄 이후로 금상만 6번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저와는 개인적으로 전혀 뭐가 없이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공유하면서 저의 의견을 같음하겠습니다. 앞에는 뭐가 더 있고요. “대한민국연극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나는 대한민국연극제가 단연코 지역 연극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믿는다. 우리 극단은 대한민국연극제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좋은 작가의 작품을 발굴했고, 액팅 코치를 영입했으며 좋은 디자이너를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대통령상 이후 전국 및 대한민국연극제에서 금상 6회를 수상했다.” 이것이 현재 지역에서 50년 역사의 극단을 지금 현재 대표로 이끌고 있는 당사자의 의견이었음을 공유해 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지연 위원 : 우리 임 위원님께서 “왜 무용계에서 이렇게 전국무용제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무용계가 모두 이것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실연자의 입장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이런 전국무용제를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서, 저희가 봄에 굉장히 많은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 무용가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 무용가들을 만나서 그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동료들에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전국무용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청취한 결과 대부분 전국무용제 운영체계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역에서 무용가들이 받는 혜택 중에 전국무용제가 가진 그 혜택이 굉장히 큰 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점점 확대되는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문제 돼서 운영주체가 바뀌고 지원방식이 변경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축제가 축소되고 결국 축소에 이어서 사장될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용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용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전국무용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용가들이 인정하고 무용가들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지정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잘 들었습니다.

김상연 위원 : 저는 보도 자료나 전국무용제에 대한 논란을 겪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느낀 것은 전국무용제가 그 자체의 취지나 성과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논점들의 타겟은 전국무용제가 아니라 대한무용협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축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대한무용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무용수들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무용제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동시에 대한무용협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옥 위원 : 김상연 위원님께서 지금 논의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대한무용협회’라고 꼭 짚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협회, 어떤 운영 주체가 오더라도 그 주체에게 이런 사업이 다년간 누적되면서 부당한 권력을 가지게 하거나 축제를 통해서 우리의 공적자금을 통해서 행사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으로도 충분히 공론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대한무용협회나 다른 특별한 문제의식이 있거나 사심이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하지만 운영과 축제 관련해서 운영정관을 제가 보니까 추진위원회나 집행위원회를 꾸리는데 전부 다 이사 이하의 내부위원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협회가 오건, 어떤 역사와 어떤 좋은 일을 했던 협회가 오더라도, 온당치 않은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쥐

고 흔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진행하자는 겁니다.

김상연 위원 : 대한무용협회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 대한무용협회를 갈아치우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지금 전국적인 이런 규모를 주체할 수 있는 협회가 대한무용협회 말고 대체가 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차지언 위원 : 없습니다.

김상연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대한무용협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의견 이어서 들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행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사람이 문제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공론화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무용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26일에 폐막한 대한민국연극제에도 제가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서 부산에 있는 연극인들과 타지에서 온 연극인들, 진주극단 현장에서 온 작품들도 제가 봤고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외부에서 잘 모르는 내밀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교부 3건에 대해서 예술위에서 정확한 대안을 못 찾으면 예술위가 통으로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이고요. 9기 위원회가 예술위 혁신의 의지가 잘못하면 굉장히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결론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미 3건이 문제가 아니고 3건 다음에 있는 3년짜리 사업들이 있죠. 다년지원 사업들이 있고 단년 심사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설계를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제가 대한민국연극제를 보니까, 지금 예술위 사무처가 올린 자료에도 모순이 있는 게 뭐냐면, 애초 대한민국연극제나 전국무용제의 목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전국연극제를 지금까지 수 십년 했는데, 지역무용생태계 다수가 가는데 목적과 취지가 지역의 무용을 살리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십년을 했는데 결과는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행사가 지역연극이나 지역무용을 활성화 시키고 살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 기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무용과 대학도 다 죽고 지역 무용생태계도 엉망인데요. 일단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지역에서 무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행사가 필요하죠. 중요하고요. 이번에 대한민국연극제에서도 토론회를 하면서 그랬는데 “10년 이상 상을 폐지하자. 그래야 이 행사가 산다.”, “아니다. 무슨 소리냐? 상은 지켜야 한다. 어떻게 만든 상인데.”라는 게 10년째 그 안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는 결론을 못 내려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연극인들, 무용인들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상에 매몰돼서 그 상을 받기 위한 심사과정이나 여러가지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금을 증액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요구들. 그리고 해외 초청 공연이 있어요. 해외 사람을 불러서 워크숍이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 부산국제연극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하는 대한민국연극제 안에 예산만 많이 쓰는 것을 넣어서요. 표도 안 나는데 그것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안을 쭉 뜯어보면 굉장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연극제, 무용제 마찬가지로 본선은 개최 도시에서 지원하고 예선은 해당 시도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 범위를 그렇게 쪼개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선전을 지원해요. 하는데 1개 단체당 180만 원인가를 주면서 100개가 넘는 단체를 지원하는데 실연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받아서, 이미 했던 공연의 영상을 받아서 한다고 합니다.

문삼화 위원 : 서영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범헌 위원장 : 잠시만요. 마무를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이어서 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저는 이번에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연극은 현장성인데 미리 했던 공연의 영상을 받아서 심사하고 본선으로 올린다는 것은 연극의 기본을 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2개 협·단체들의 중복지원 문제. 대표 행사만 받는 게 아니고 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여러 행사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연극도 늘푸른연극제 2건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행사를 정해서 그 행사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방향으로 예술위에서 해야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지점들을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컨설팅을 해서 전달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여기까지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삼화 위원 : 저는 서영수 위원님의 앞부분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연극제 이번 부산이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행사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문제죠. 이번에 부산은 대한민국연극제 측에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팠던 특수한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신 부산연극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연극제만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건 사실 공평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정사업이 뭐니까? 이것만을 지켜주려는 것이 지정사업인데 이것을 중복지원 차원에서 같이 놓는 것은, 그러면 그냥 똑같이 다년지원으로 가야지 지정사업이 왜 있느냐는 거죠. 지정사업은 전국 단위의, 결국은 나라가 했던 것을 우리가 지켜서 해 주는 것이니까 이것은 그냥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다른 공모제는 별도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으니까 다른 것은 중복이 안 된다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대한무용협회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문제가 많다고 하니가 문제가 많은가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어요. 어떤 지침을 준다거나 최소한의 규정을 마련해 주는 것은 하더라도 일단 저는 지정사업만은, 이 행사만은 건드리지 않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집행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무용협회도 나중에 회장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집행하는 사람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사업만큼은 저희가 지켜줘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동의합니다. 없애자는 게 아니고 지정교부를 하되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죠.

김대현 위원 : 기본적으로 지정교부 사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공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역할을 맡겼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운영방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이 2가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정교부 사업 자체의 존폐를 다루는 문제와 지정교부로 넣어줘야 될 대체불가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이냐? 이 2가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개선적인 문제들은 1회성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게 서울국제도서전인데 여기는 출판협회가 진행 중인데 그전까지는 굉장히 지리멸렬했다가 잘 됐다가 최근 몇 년간은 굉장히 호황입니다. 각 대표 단체가 독점적으로 진행하지만 브랜드를 만들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방안이 된다는 것은 저희가 논의 방안을 정할 때 지정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고 지정사업이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우선 사전논의에서 지정사업 관련해서는 별로 논의가 없었고요. 지난 1차로 잠시 말씀

나는 것과 오늘 주요 안건으로 올라온 것인데요. 저는 서영수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어렵겠구나. 두 분의 위원님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장르를 존중하면서 장르 쪽에 맞춤형으로 시각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용 같은 경우를 보면 그동안 운영주체, 운영방식, 지원금액, 원점에서 백지화해서 올해 2026년에 다년으로 지정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정병국 위원장 시절부터 사무처와 위원장이 무용계를 대상으로 한 현장업무보고, 현장토론회 때 이미 약속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9기 위원회가 향후 비전과 철학, 위상을 결정짓는 외부로부터의 시선이 이것으로부터 결정 난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무용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존치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무용계가 전부 공감할 겁니다. 1992년 춤의 해 때 생겼는데 저는 30년 전에 정말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긴요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 지역문화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는데 199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간 문예위가 6억 그다음에 지방 지자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10억, 15억, 4억 등으로 해서 30년간 250억에서 300억이 전국무용제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오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역의 무용계가 활성화가 되었느냐? 물론 인구소멸로 인한 무용 인구도 소멸된 것도 있겠지만 지역의 무용은 완전히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300억을 투입한 것이 이제는 달리 가야된다. 전국무용제의 취지가 너무 좋거든요. 지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현 정부의 국정기조가 지역활성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효과성 있게 잘 갈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무용계 특수성을 얘기하면 국정감사에서 작년에도 지적되었고요. ☆☆☆ 예고 사건과 연동돼서 얘기를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사를 검색하면 대충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작년의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10억의 예산으로 대전에서 했는데, 제가 개막식, 폐막식부터 다 봤습니다. 지역에서 어떤 아우성이 있느냐 하면, 지역에서 5억, 10억, 15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역의 무용발전과 지역의 무용인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남겼냐? 어떤 성과가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대전의 전통무용가들 1인당 100만 원을 줘서 7인이 출연해서 70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전문단체 기성 무용인들이 8팀이 이틀간 했습니다. 그래서 16개 단체인데 1개 팀당 25만 원씩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떼고 20만 원이라고 하면 1개 팀당 6명에서 8명까지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세종시에서 ◆◆◆◆◆이 청년예술인단체에 30만 원을 줘서 1인당 25,000원으로 물값도 안 되었다고 엄청난 질타와 논란의 근간이 되었는데 대전도 기성인입니다. 기성무용가가 참여를 했는데 팀당 25만 원이면, 그런데 무대에 서려면 연습기간도 있는데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러면 10억에서 대전에, 그것은 사무처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0만 원이나 줬을까요? 그래서 지역의 원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수차례 언론과 국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대전에서 공연하는데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고는 ●●에 있어요. ●●예고 학생들이 ●●예고 차량을 타고 주말에 교복을 입고 대전으로 공연을 감상하러 옵니다. 무용계가 ☆☆☆ 예고 사건이 대학교수, 예고 카르텔로 이루어져서 그런 문제가 연동돼서 포괄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거든요. 대학교수가 하니까 ○○ ○○에 있는 학교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오는데요. 혹여나 안전사고라도 나면 지원주체가 되는 예술위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우리 전국무용제를 조금 더 가치 있고 성과 있는 행사로, 이것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더 키워야죠. 유의미하게 더 키우기 위한 발상과 계획, 로드맵은 무엇인지에 대해 조금 더 탄탄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좋은 말씀 들었고요. 이어서 의견 개진을 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가로 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옥 위원 : 논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요. 성 위원님께서 총체적인 문제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지원 형태로는 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어.”라고 지원하고 우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공공성이나 본래의 취지를 회복하고 운영의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반대로 우리가 “이 사업을 해 줄 사람 모여.” 이렇게 되면 지금 말로 하면 위탁이고 용역이 되겠죠. 하지만 꼭 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회복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는 형태의 보완적 제도라도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성기숙 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중복 다건지원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무용협회가 문예위만 해도 5~6건이고 서울시에서 서울무용제라는 굉장히 큰 행사를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전국무용제, 서울무용제, 대한민국무용대상 3개가 유사한 특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를 보니까 20명을 상근으로 하고 1억 1,000만 원으로 임금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무용협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건 사업들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사무국장도 있고 비상임위원장님도 인건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사업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무용협회 사업에 짧은 안무가 창작공연 평가 모니터링이 끝나고 결산을 줌으로 회의 하는데 사무국장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업도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있는 인건비라는 게 여러 군데에 문어발처럼 들어가 있다면 회계와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예위에서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지원으로 지난해에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것도 인건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현장에서는 무용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다건 중복지원으로 되는데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한 사람이 3건, 4건에 다 들어가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투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의무인데 납세자로서 어떻게 쓰이는지 권리 주장도 한다는 것이죠.

이범현 위원장 :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도 같이 토의해 주셔도 됩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사업의 역사나 취지 등은 인정되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8월 위원회 전체회의 또는 8월 중순에 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 축제 주체들이 와서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는 어떻고 앞으로 3년간 지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위원님들은 요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은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의견을 들었고요.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들의 신중한 의견을 다 들었고요. 저희도 이번에 안건으로 올리면서 그렇게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싶은 것은, 오늘 결론이 안 나고 다음 달에 하더라도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기간 동안 아까 말씀하신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나 뭘 요구할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합의된 내용으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성기숙 위원 : 사무처의 고심도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원금을 예술인들한테 주잖아요. 그러면서 온갖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요. 그게 위원회의 운명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창호 팀장님의 말씀은 “바뀌겠느냐?”라고 너무 회의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류재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운영하는 주체들이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주겠다는 게 전제거든요. 그게 아니고 무용계에서 문예위와 그동안 논의되고 약속한 운영주체, 운영방식, 지원금액까지 총체적으로 원점에서 하자고 했는데요. 이게 30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일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서울권 몇 개만 지원기구로서 정책기관이 있었지만, 서영수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은 지자체도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문화재단도 다 생겼잖아요. 그러면 지역의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차라리 공공으로 문예위가 지역문화재단에 그 예산을 주고 지역에서 운영을 해 보는 것은 어떠한 제안도 현장에서 있어요. 공공성을 더 강화하자는 것이죠. 대전에서 했을 때 제가 갔는데 심사위원이 14명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분은 2명이었습니다. 전부가 서울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를 했는데 10명이 발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1~2명이 대전분이고 논의 내용도 그다지 지역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심포지엄을 하든 공연을 하든 15억, 20억이 투입되면 후속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남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가치창출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임영욱 위원 : 죄송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결과 직접 관련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원안 검토를 할 때 풍부하게 나와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무처에서 계신 두 분의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그것을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합의해서 제안을 해 달라. 다시 말해 우리도 개선을 위해서 함께 가겠다는 의지로 이해를 했는데 맞죠? 그래서 이전의 차담회와 오늘 논의를 통해서 굉장히 생산적인 것은 더 이상 축제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에 대한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으로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위원 : 저도 임영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게 계속 순환되는데요. 지정교부 자체의 문제성을 검토할 것인지? 그런데 아까 논의사항으로 봐서는 행사 자체의 의미나 역사성, 대체 불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운영주체를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 운영주체는 그대로 가더라도 다른 외부적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까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김상연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지정사업만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중복지원이라는 것도 같이 있으면서 이것까지도 더 부정적인 견해로 다들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논의하려면 되게 다루어야 될 것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짧은 시간에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기타 의견을 발의해 주실 분 계신가요?

문삼화 위원 : 적어도 지정사업에 대한 것은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요지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옥 위원 : 문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명확히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의결되면 앞으로 3년 간 지정교부가 되는 건가요?

이범헌 위원장 : 의결되면 그렇습니다. 다만, 토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조금 더 토론 의견이 더 없으시죠?

차지언 위원 : 저도 지정에 대한 것은 문 위원님 말씀처럼 오늘 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비판의 목소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와 닿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목소리는 잘 안 들립니다. 그리고 제가 무용협회 관련된 기사들을 어제와 그제 꽤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같은 분들이셨고요. 이것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다. 사실 견제가 필요합니다. 대한무용협회가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견제와 관찰은 늘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저희가 보고를 받은 것처럼 대체불가능 때문에 저희가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하다 보니 대한무용협회 이름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라는 제안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지역문화재단은 그 지역의 예산을 쓰고 일을 운영하는데도 인력이 모자랄 겁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문화재단은 겪어본 결과 행정적인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용에 대한 예술성, 독창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주도하겠죠. 그러나 전국무용제가 가지고 있는, 무용인들이 가진 고유한 독창성, 예술성, 가치성을 이해하고 그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극장 인프라나 그것을 운영하는 경험자 등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국무용제의 운영이나 위치라든가, 위상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재단으로 운영권을 이관한다는 것은 무용계에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무용인들에게는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성기숙 위원 : 차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하나는 발언에 대해서 교정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무용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이시고요. 이것은 작년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의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교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무용제의 운영주체, 운영방식 그리고 지원금액을 통으로 놓고 다시 원점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중에 하나로 현장 예술인들 중에는 지역의 문화재단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관해서 공공성을 획득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지 제 의견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다. 그 부분 교정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상연 위원 : 오늘 의결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진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솔 위원 :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오늘 저희의 시간이, 다른 부분이라든가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이나 다양한 안건들이 차관 면담이 있다고 하셔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넘어갔다가 따로 할지에 대해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압축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들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저는 오늘 이 안건 의결한다는 것을 위촉되자마자 듣기 시작했고요.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들, 수정할 부분들과 주최 측에 대한 논의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정사업, 결국 행사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는 오늘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쳐요.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을 최종 듣고 마무리 토의를 하고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문삼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의결하자고 하신 게, 예를 들어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 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자는 것까지 의결하자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수행단체나 지원예산 부분 말고라도 사업 자체에 대해서라도 의결을 하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문삼화 위원 : 네.

성기숙 위원 : 오늘 의결하자는 주장이 일부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 부분은 동의 여부를 정리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요. 충분히 논의가 개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선 지금 의견으로 제시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요약적으로 객관화를 해 보면,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본안 의결을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수정·보완 의결안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문삼화 위원님을 기준으로 하는 의견에는 이 안에 대한 부분은 의결을 찬·반 가부를 묻고 나머지 긍정적으로 서로 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적인 모든 조건부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를 해서 보완하고 문제 제기가 된 부분들은 후속 논의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자는 의견으로 취합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오늘 의결하지 말고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의결을 하되, 오늘 논의되어진 토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문제해결점을 심층 논의하고 찾아서 그것에 대한 방향성 의제가 모아지면 다음 위원회회의를 지정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 3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3가지 요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3가지 요약에 대한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는 오늘 의결을 보류하고 논의를 통해서 재 안건의결 부의를 하고 가자는 안. 그다음에 오늘 의결을 하고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 지적된 혹은 사전에 논의된 문제점을 요약해서 수정·보완을 한 뒤에 의결을 하자는 내용. 그렇게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가지로 요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2가지 요약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건 가·부를 묻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합니다. 안건 가·부에 대해서 묻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성기숙 위원 : 2가지로 위원장님께서 정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만, 만약 오늘 보류가 아니라 의결로 간다고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가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집중되어 있고 국정감사 사안이고 문화예술진흥법 전환의 시점에 있어서.

문삼화 위원 : 지금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하시죠.

성기숙 위원 : 위원회가 관심의 초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삼화 위원 : 잠깐만요. 영향력을 끼치는 발언이시라고요.

성기숙 위원 : 오늘 의결로 갔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명으로 하기를 저는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결이라는 것은 위원 각자의 책임을 통한 의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명으로 찬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삼화 위원 : 거수로 하시죠.

이범현 위원장 : 네. 의견 주셨고요. 마무리 의견을 고려하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현재의 토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 현재 수정 의결로 진행하자는 것으로 하나가 요약됩니다. 안전 부의된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묻되 반드시 지금 논의된 내용들을 수정·보완하자. 그리고 그것을 규정으로 하든 권고사항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회 차후 의결에 대한 부분으로 한 안전. 그다음에 안전을 유보하자. 오늘 안전에 대해서 결의 자체를 유보하고 오늘 토의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들이 심층적으로 전체적 정리를 한 뒤에 보완사항을 가지고 의결안에 다시 안전 부의를 하는 것으로 하자. 이 2가지 요약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잠깐만요. 아까 거수로 하자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오늘 의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거수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2가지 안에 대한 것은 거수로 의사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으로든 결정이 되어지면 결정된 사안에서 다시 재의결이 필요할 때에는 비밀투표 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 2가지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먼저 토의 논의된 내용들을 조건부 전제로 해서 수정·보완을 한다는 전제로 오늘 안전에 대해서 우선 의결을 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찬성하시는 분은 우측 손을 거수로 의결하겠습니다.

임영욱 위원 :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건부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도?

이범현 위원장 : 그 조건부에 대한 부분은, 이 안이 의결되어지면 조건부에 대한 것은 지금 논의를 주셨잖아요. 토의해 준 내용들을 전제로 하는 기본 조건인데 이 조건에 대한 것을 강제 규정으로 해서 지침처럼 지원조건으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권고해서 사전에 수정·보완에 대한 소명과 답변을 듣고, 그 주체의 조직체가 소명할 기회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점적인 부분에서부터 논의가 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는 이제 정말 견잡을 수 없는 현장의 반응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오늘 토의에서 논의된 부분을 충분히 전제로 하는 조건부가 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조건부라는 것은 향후 임시위원회를 통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그 조건부에 대한 부분을 결의해 주시면 방향을 잡는 안이 되겠고요. 사안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아예 안전 의결을 유보해서 일종의 안전 유보를 통해서 오늘 토의된 내용들을 임시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고 전제하는 조건으로 다시 다음 위원회에 안전 부의로 가자는 것으로 요약되는 겁니다.

김대현 위원 :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중에서 조건부라는 게 뭐냐 하면, 수행단체를 제외한 행사명.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에 대한 지정교부제를 여기에서 의결하고

이후 주체나 행사방법들에 대한 게 조건부로 가는 것 아니었나요?

이범헌 위원장 : 그것을 논의해서, 그 조건부를 논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 가부를 물으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결안건으로 올린 게 운영주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협회, 전국무용제 등 주최자와 행사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부는 너무 복잡하고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유산청 같은 경우 논란이 있으면 보류냐 그날 당일 의결이냐로 간단하게 합니다. 전부 다시 재논의가 보류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조건부가 없습니다. 그냥 “의결하느냐?”, “보류하느냐?” 이것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논란과 ☆☆☆ 예고의 심각한 문제도 있어서 만약 오늘 통과 되는 의결이 된다고 하면 무용제는, 이걸 그냥 제가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동요가 있고요. 이게 11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국회에서 결정되려면 그렇죠. 11월 말까지 가는데요. 기획예산처에 올라가더라도 아마 무용인들이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처를 찾아갈 거예요. 예산에 대한 변경 의미가 아니다. 예술계의 여론 수렴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시고요.

이범헌 위원장 : 여기까지 요약을 하시고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인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상연 위원 : 지금 조건부라는 게 일단 존치 여부는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는 저희가 존치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만 의결했으면 하는 거죠.

문삼화 위원 : 거기까지 하자는 것이죠.

김상연 위원 : 대상 주체 논의는 나중에 하고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자는 의지는 오늘 의결하자는 거죠.

임영옥 위원 : 이 안건은 축제의 존치 여부가 안건이 아니라서요. 축제 여부는 지금 제도상으로는 협회에서 “축제를 하겠어.”라고 들고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는 그 협회 플러스 결부되어 있는 사업을 지정 지원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 우리가 축제 존치에 대한 것은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성기숙 위원 : 의결안건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라고 봐요. 지정, 협회. 의결안건으로 문서에 충실하자면 보류냐, 아니냐인 것이죠.

이범헌 위원장 : 네. 성 위원님의 의견은 그렇게 요약이 되고요.

왕치선 위원 : 저는 여쭙볼 게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건부 지정을 결의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 결의내용을 신청단체가 알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받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아마 고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거기까지 의견청취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혹시 마무리 토의 의견이 더 있으신가요? 더 없으시죠? 그러면 찬반 동의를 얻는 것에, 지금 현재 이 사업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 의견도 청취를 하셨는데요. 이 행사에 대한 존치 문제의 정책적 결정의 안이라는 성격의 문제와 대한민국연극제 또 전국무용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조금 열외로 두더라도 2개가 현재 예민한 현안

으로 되어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주체는 이 행사에 대한 주체로서의 동일시되는, 동일체 개념의 구조를 갖고 있어서 이것을 분류해서 이 사업은 하되 주체는 변경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도, 의결을 하게 되면요. 그 부분을 과연 우리가 이렇게 권한 의결을 할 수 있는 사안의 문제가 되느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부분이 있고요. 또 성 위원님의 원론적 의견대로, 안전대로 의결을 하느냐 아니면 의결 유보를 하느냐 등 둘 중에 하나로만 의결하면 좋겠다는 행정적 의견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전체 의견으로 취합하면 저는 안전의 유보적 처리로 이런 문제 제기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전제로 유보적으로 보느냐? 혹은 완전히 수정할 수 있는 안으로 보느냐. 둘 중에 하나로 본 이유는 그렇게 요약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는 하고 주체와 문제 방법은 따로 우리가 의결해 준다는 권한의 문제가 조금 예민할 수 있어 보여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찬반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보여져서요. 찬반을 묻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을 유보하자.”라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의결을 하되 수정의결하자는 것은 성 위원님이 의결안을 그냥 의결하자는 것의 보완적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대안적으로 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안전 유보 쪽으로 찬성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 자체를 유보하는 것으로요. 그런데 전제적으로 의결은 하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을 위원회 차원에서 강제규정 그러니까 지원의 조건부요. 조건부 규정 그리고 권고규정 등은 충분히 후속조치로 할 수 있다는 전제 의결을 한다는 차원이면 그냥 의결을 붙이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의견이 있고요. 수정의결안으로 가는 것조차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의결하느냐? 안전을 유보하느냐? 2가지로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압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 유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 의제에 대해서는요.

문삼화 위원 : 잠깐만요. 한 달을 더 기다리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저는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범헌 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가부를 물으려고 합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위원으로 와서 위원회의 역할에서 권한과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의결입니다. 그러면 의결이라는 것은 오늘 제 424차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안전 다섯 번째가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으로 해서 문서에 나와 있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의결이나 보류냐가 아니고 여기에다가 수정의결해서 안전을 상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다시 안전 상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수정의결 안전으로 해서 별도의 안전상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하는 절차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맞는 겁니다. 오늘은 이 건에 대해서만 보류나 의결이냐로 가야지만 맞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제기가 있으므로 수정의결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난제가 있는 만큼 지금 행정, 사무적 그리고 의결에 규정을 전제로 놓고 안전을 유보하자는 안전 하나. 그다음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안. 2가지 중에 하나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이제 토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의제에 대해 찬반을 묻는 안은 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반대의견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최종 취합해본 토의 결과, 위원장의 최종 결론은 안전을 유보하자는 안. 그다음에 현재 의안에 올라온 원안대로 의결하자. 그러니까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것 하나와 안전을 유보하자는 안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어느 쪽으로 결정할지에 대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하시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그 의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찬반 가부를 묻겠습니다. 거수로 하겠습니까? 무기명과 기명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문삼화 위원 : 거수로 하시죠.

이범헌 위원장 : 거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 동의를 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거수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유보하자.”라는 게 1. 그다음에 “원안대로 의결하자.”라는 게 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안인 안건을 유보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우측 손으로 의사 표명해 주십시오. 거수해 주세요. 사무처는 기록해 주십시오. 위원님 명부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만 들어주십시오. 5인으로 확인합니다. 안건 유보에 대한 의결은 5인의 위원님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번 회의 원안대로 오늘 의결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우측 손으로 거수를 들어서 찬성 유보를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의사결정의 규정상 위원장은 가부의 의사에 있어 위원님들과 동일한 합의체 기준으로 가부에 의사를 표명합니다. 일반 의사체에서는 가부 동수일 때 위원장의 결의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 조항에는 위원장이 가부 표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과 관련 본부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송시경 사무처장 :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장님은 표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내가 확인 요청한 것에 대한 확인 답변을 해 주면 됩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구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구문모 위원님은 기권을 하신 거죠?

구문모 위원 : 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금일 의결절차 진행이 4인이고요.

이범헌 위원장 : 아니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표결에 대한 사무처의, 우리 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정을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를 하느냐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일 때 권한을 갖느냐?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것을 확인해 주시라고요.

김원 기획조정팀 대리 :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정관을 읽어주세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위원장님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가부 표결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수일 때 위원장의 권한으로 의결합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아니요.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러니까 그 규정을 정확히 해 주세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저희 과반수는 6명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부결로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결의 기준은 6명이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네. 과반수이기 때문에 6명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우리 위원회가 총 11명이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예, 맞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과반수 이상은 6인의 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부를 결정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전원 출석으로 5인. 그리고 제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4인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안으로 의결되는 부분은 결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슬기로운 방식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를 가결안이 나올 때까지 토의하기에는 시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과반수 이상 동의의 원칙입니다. 의결의 기준은요.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구요. 지금 제가 의사표명 표결을 안 했는데 5대 4의 상황입니다. 한 분은 기권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의결정족수 과반수이상의 찬성 여부로 결정에는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랬을 때 혹시 추가 의견이 있으시다면 의견을 받고.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다시 한번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가 6명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반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로 보면 부결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지금의 의결은 안전에 대한 채택 찬성 여부입니다. ‘채택’. 안전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안전 부의된 내용의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토의 결과에 대한 것을 의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을 유보할 것이냐? 아니면 기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과반수 의결이란 개념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토의 의견을 제가 다시 물은 이유는, 이것은 선택이잖아요. 가부를 어느 쪽으로 확정할 것이냐를 묻는 부분이라서요. 이것은 과반수 이상 6인의 의결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수결로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채택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찬성 가부를 묻는 방식이 어떻겠느냐는 것을 제가 요약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것은 오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출석 인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 위원 과반수입니다. 어차피 오늘 전원 출석하시는 하셨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위원 중에.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재적 위원입니다.

성기숙 위원 : 12명.

이범헌 위원장 : 아니요. 11명.

성기숙 위원 : 보류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 의결할 것이냐도 사항도 의결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땡땡 치셨잖아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부결입니다. 이것은

이범헌 위원장 : 지금 그 안을 최종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의사표명을 하지 않아도 재적위원회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인데요. 6명의 찬성 결의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둘 중 하나 채택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 위원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결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십니다. 혹시 의견이 있습니까?

김대현 위원 : 그것은 다른 것인데요. 저희가 안전 내용을 표결에 붙인 것이 아니라 안전의 형식 자체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안전 내용과는 별개의 얘기고요. 안전 자체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안전을 여기에서 의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표결한 것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래서 제가 마무리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의결사항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어떤 의안을 채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결이라는 결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5대 4나 5대 5나 같은 조건이기는 한데요. 재 토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재 토의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보 5표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에 붙이자라는 것이 4표, 1표는 기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의사 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 어느 쪽이든 그런 상황

에 대한 논의의 발미가 되지 않는 기준으로 해 놓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 유보를 하자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이미 이것을 했는데요. 이것은 안 맞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니까 재의결을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의사표명을 하려고요.

성기숙 위원 :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제가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사무처에서 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1220호 의결안전 채택여부에 대해 찬반을 했을 때 안전 유보는 11인 중에 5인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안의결 진행은 4인이 하셨습니다. 원안이 의결되려면 6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만약 원안의결 처리를 행사하시더라도 가부 동수이기 때문에 부결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안전 유보에 투표하시면 당연히 금일 원안의결 진행방식은 부결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리고 1인 기권도 공식화 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 자체가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심의의결을 하느냐 아니냐라는 처리방식에 대한 안전은 부결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이 유보되는 쪽으로 결의된 의사표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유보가 되었다고 하면 이 결정은 8월 위원회 전체회의까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것은 후속으로 정리하고요.

문삼화 위원 : 잠깐만요. 부결이 되었다는 것은 유보를 하자는 것도 사실 부결된 것 아닌가요? 지금 “오늘 할래?”, “미룰래?” 그런데 이 자체가 부결된 것이잖아요. 6인이 충족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논제가 “오늘 할래?”, “미룰래?”였어요. 쉽게 얘기를 합시다. 그런데 지금 6인이 안 나와서 이 투표 자체가 무효화 된 것이잖아요.

이범헌 위원장 : 의견을 접수했고요. 최종 의견을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종 의견을 정리했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사무처 의견을 정리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6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원안의결 진행 방식이 안 되었다는 얘기고요. 다음 달에 다시 재논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안전 자체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의결이 안 된 겁니다. 본안판단에 따른 안전 부결이 아니므로 다시 동일한 안전을 올리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안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이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안전 유보와 원안의결 둘 중에 어떤 안으로 채택하느냐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김대현 위원 : 아닙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을 주세요.

김대현 위원 : 원안의결이 아니고 원안을 투표에 붙이는 게 부결된 것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니까요.

김대현 위원 : 원안내용을 저희가 의결했냐 부결했냐가 논의가 아닙니다.

이범헌 위원장 : 우리가 안전을 의결하는 게 아니고 안전 유보의 채택이냐?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을 붙일 것이냐를 결정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원안 의결사항을 그냥 붙여서 가부를 물으면 정리가 되는데요. 이 요약에 동의하시는가를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적 용어로 정창호 팀장님께서 정리를 하시고요. 위원장님이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사무처에서 의견이 더 있어요?

이범헌 위원장 : 어렵죠.

김대현 위원 : 원안을 부의할 것인가의 문제였고요. 내용을 저희가 토의한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의결을 하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쪽으로 채택을 할지가 의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6표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의제의 최종으로 가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붙였는데요. 그게 의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모든 토의의 결과는 이 원안의 의결을 ‘가’냐 ‘부’냐라는 것으로 결론내면 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을 유보하자 5표. 그다음에 원안대로 의결하자 저는 의사표시 안 한 상태에서 4표. 그리고 기권 1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안대로에 대한 부분으로 의견을 최종 물을 것인지? 그냥 이 상태로 유보를 할 것인지? 이것을 재토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의결로 방향을 봐야 되는데, 마지막 의견을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아니, 이것은요, 오늘 2가지였잖아요. 이 안전에 대해서 보류를 할 것이냐? 이것을 오늘 의결할 것이냐인데 보류로 위원장님 의사와 관계없이 결론이 났으니까요.

문삼화 위원 : 아니죠. 결론이 난 게 아니죠.

이범헌 위원장 : 그게 의결이 안 되어서요. 6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의결이 안 되었죠.

성기숙 위원 : 오늘 의결이 무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6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처리 방안도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유보에 대한 제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하는 안으로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기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둘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은, 가부 결정의 과반수를 못 넘어서 이것은 일종의 의결 무산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결 무산된 것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지금 현재 토의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안전 의제는 정식으로 의제 채택이 돼서 안전으로 올라온 원안입니다. 원안에 대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이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성기숙 위원 : 아니죠. 그러면 처음부터 하는 건가요?

이범헌 위원장 :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니까, 안전을 유보하는 것까지도 6표가 안 나왔잖아요. 결론적으로, 여러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는 것은, 이것을 더 심층하게 하겠다고 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의결은 후속조치로 하더라도, 원안의 의결에 대해서는 안전 부의를 해야 이 회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결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받고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제기를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원안대로 의결에 대한 안전 부의를 하게 됩니다. 유보 안전에 대해서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동의를 하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하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원안의 의결방식을, 안전의 가부를 물어야 합니다. 이게 회의체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를 묻도록 합니다. 동의하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하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지금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 비밀투표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거수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임영욱 위원 : 거수를 제안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거수를 제안했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마지막으로 사무처에 이 절차가 행정적, 법적으로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지금 2가지를 물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정리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만 물어야 하거든요. “유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유보는 6명이 결정되었으면 그것은 결정되는데, 유보가 지금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다시 하나를 묻기를, 찬성을 어떻게 할거나 다시 묻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죄송합니다. 국가유산청이나 이런 데에 의결안건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되면, 오늘 보류냐 아니냐 2개를 가지고 했는데, 찬반 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무산이 돼서 오늘은 그냥 끝나는 것으로 진행을 예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방식이, 왜냐하면 보류냐 아니냐를 했는데 안 맞으니까 자동 무산이죠. 그리고 다음에 재 부의를 하면서 별도의 회차에 다시 안전 상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제안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규정대로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건만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묻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회의 자체를 유보할 것입니까?”라고 하나 묻고요. 두 번째로 위원장님은 무조건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투표권을 가지니까 1건 하나만 묻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로 결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유보로 결정된다고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기숙 위원 : 이 건과 관련해서 사무처장님의 개인 의견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회 규정이나 정관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그러니까요.

성기숙 위원 : 중대 사안에 대해서 개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송시경 사무처장 : 예전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8기 위원회에서든 2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서 혼란이 있었던 경우를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의사를 진행하고요. 오늘 전원 참석이기 때문에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적위원 과반수. 그러니까 과반수는 6명입니다. 6명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딱 하나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삼화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면 그냥 표결을 1건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표결을 하시고 유보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회의는 성립을 했고요. 두 번째로 과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6명 이상 찬성이 나와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러 개를 묻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만 물어야 해요. 그러니까 유보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만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삼화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신 부분을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2항에 보면 표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위원장님이 어느 쪽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물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를 하겠다는 것에 위원장님이 찬성하셔서 6명이 되면 유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물었으니까.

성기숙 위원 : 사무처장님, 이게 하나만 물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땡땡땡 해서 의사표명을 했어요. 의사표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만약 보류에 찬성을 한다고 하면 6표가 되잖아요.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지금 의견을 주셨고요. 좋은 소식 하나 들려드릴게요. 차관님 회의는 취소를 했습니다. 우리의 사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문체부도 회의 중인데요. 거기도 길어지고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늦어지는 거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기로 했어요. 현안은 중요하니까요. 다만, 오늘 내일 다투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오늘 우리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장 귀중한 일정이고 사안이기에 때문에 충분히 의논하고 최종 결정을 하고자 하지만 소모적으로 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5분 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 필요한 부분들은 논의해 주십시오. 대략 압축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 이해하실 정도의 결의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5분만 브레이크타임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만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 보고사항이 1건 있고 기타 토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향후 9기 위원회의 의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차관님 일정도 급히 잡은 이유가 그런 현안들을 구체화 하고 우리의 현안들. 그리고 8월 5일은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문체부 공식, 이것은 2차 업무보고회라서 지난해 1차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기준으로 각 기관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보고한 것에 대한 점검회의라서요. 그런 만큼 오늘 회의도 그런 선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5분만 휴식시간을 갖고 바로 속개해서 빠른 속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정회)

(17시 43분 속개)

이범헌 위원장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먼저 회의 논의의 논점을 명확히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의사봉 3타를 한 것은 이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하기에는 어려운 의사 개진이 이루어졌고 토론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런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안건으로 채택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결정하는 의사봉 3타였습니다. 그 안을 유보할 것이냐? 또 원안대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의결에 대한 동의와 재청, 삼청을 얻어서 의사봉3타를 하고 그것에 대한 찬반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유보 안건으로 한 것이 5표 그다음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쪽으로 가자가 4표, 그리고 1표가 기권이었습니다. 저는 의사 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동 기권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5:4:2의 결론으로 정리가 되었으므로 이 2가지 안건 의제에 대해서는 부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묻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 방점을 찍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 있으시죠?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 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그렇다면 회의체의 원안대로 이것을 가부에 붙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에 대해서 짧은 마지막 의사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충분히 의사개진을 해 주시고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우리 회의체에 대한 부분을 외부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흠집이 되지 않도록 하는 회의주체의 보안 유지는 늘 유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권한과 모든 명예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회의체는 앞으로 나가는데 가능하면 더 힘이 실어질 수 있도록 보완 유지가 필요하며 회의체의 대외비는 잘 유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 한 분이 한 번씩 의사 개진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논의 토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시간제한은 어떻게 할까요?

이범헌 위원장 : 가능하면 2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2분을 체크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화 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동안 어느 정도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 논의지 위원님 간 개인감정이나 사적인 이해관계로 의결하는 게 아닌 만큼 가급적이면 서로 뜻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의견을 묻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중에 2027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 교부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의사표명을 해서 보류는 5인, 보류 반대는 4인, 기권은 2인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은 무산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은 이렇게 된 것을 다시 지정교부 결정의 건을 지정교부를 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를 또 묻는 건가요?

임영옥 위원 : 성 위원님, 아까 묻은 것은 보류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은 게 아니고요. 보류할 것이냐 수정해서 할 것이냐?

이범현 위원장 : 원안대로 할 것이냐?

임영옥 위원 : 우리가 아까 손을 들어서 5:4:2가 나왔던 게 그 부분이라서요.

성기숙 위원 : 수정안건이 아니고 보류냐 아니냐로 하셨어요.

이범현 위원장 : 그것은 회의록이 정리되면 다시 확인해도 되고요.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위원님 말씀대로 가부를 묻은 내용은 유보하자는 것에 대해 찬반을 묻은 것이 아닙니다. 2가지 안. 원안을 무시하고는 그것은 불법이 되니까 원안대로 의결을 할 것이냐? 유보를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의제로 결정해 달라는 것에 동의, 재청을 해 주셨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찬반을 묻은 겁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은 것이고요. 그게 5:4:2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안의결을 하는 것. 또 유보 의결을 한 내용이 아닙니다. 둘 중에 어느 안건을 채택할 것이냐를 묻은 것이어서 이제는 채택에 대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원안에 대한 부분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해 주시고 토의를 끝내면, 원안의 가부를 묻는 절차로 가는 토론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셨죠? 성기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회의 원안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토론한 것을 존중해서 의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묻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확인을 하고요.

성기숙 위원 : 이해는 했는데요. 국가유산청과는 조금 달라서요. 지금 진행 방식이 규정에 맞게 가고 있는 건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이 부분은 규정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어서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위원장으로서 소견을 갖고 있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특정 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등하게 2가지 건에 대해서 안을 던지셨기 때문에 어느 쪽이 됐든 과반수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에 못 미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찬반 여부를 다시 묻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그러니까 회의체의 원안으로 돌아온 겁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이것은 규정상 이렇게까지 내용은 없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묘라서요.

성기숙 위원 :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죠?

이범현 위원장 : 이런 세부 규정까지 있지 않고요. 그것은 어느 회의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것 자

제가 불법이 아니라는 소신과 소명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동의를 얻은 것처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토론을 존중해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유보에 대해서 묻는 절차를 확인한 겁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의결하면 무시하고 했다는 소지를 남기지 않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전원 합의체라는 위원회의 특성상 최우선하는 존중하는 의미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원안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안건 토의는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원안의 가부를 묻기 전에 최종 위원님들의 의사 토의를 한 번의 기회씩 하고요. 물론 추가 질의응답이 필요하했다면 하겠지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우선 거수로 진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상연 위원 : 혹시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기적처럼 저에게 다 동의를 해 주셔서 말씀하실 필요도 없이 끝날 수도 있을까봐요.

이범현 위원장 :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김상연 위원 :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합시다만 저희가 단체하고 사업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제로 놓고 가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외부에서 노이즈가 있죠. 그런데 이게 축제가 아니라 협회에 대한 노이즈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회가 잘 이끌고 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잖아요.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도와주는 게요.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지원해 줄 것인데 수정안을 분명히 권고할 것인데 수정안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런데 제가 하나 우려되는 건 의결을 먼저 해 놓고 수정안을 나중에 썼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말지의 부분에서 또 노이즈가 생길 수 있으니까, 8월 중에 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주더라도, 수정안을 빨리 만들어서 그쪽에 전달하면서 그때 의결해 버리면 문제가 제일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의결 유보지만 저희가 수정안을 줘서 의결을 시키자는 거죠. 의결을 하기로는 결정해 놓는 것이고요. 그러면 수정안을 저희가 못 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범현 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정의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결이라는 개념은 강제조항을 전제하고 의결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원기구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슬로건의 문제로 지원하고 결정하고 나면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의 김상연 위원님 의견도 우려되는 게 맞습니다. 결정하고 나면 안 들어주면 그만이니깐요. 그래서 제가 아까 2가지 안으로 찬반을 묻기 전에 수정안건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이것이 정말 지금 시점에서 보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결의 방향성이 오늘 논의된 것처럼 거의 의결방향으로 가는 쪽인데 강제조항이라도 뭔가 수정보완이 안 되면 안 되는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하는 수정의결을 지금 할 수 있다. 의결안건으로 올라온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놓고 이 안건을 의결하자. 그래서 찬반 가부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자. 이것이 제가 아까 수정안건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지금 의견을 주신 각각의 우려를 여기에 강제조항으로 넣고 그것을 전제조항으로 해서 의결의 찬반 가부를 묻고 ‘가’가 되면 가에 맞게 이런 조건을 수행하지 않으면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전제. 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의결을 하고 의결정족수에 맞아서 6표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사후에는 말을 안 들을 것이라는 게 우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정안건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혹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연 위원 :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건데요. 없는 수정안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범현 위원장 : 아닙니다. 의견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전제를 결의해 주시면.

김상연 위원 : 수정안이요?

이범현 위원장 : 예를 들면 심사위원회 혹은 추진위원회 등 거기에는 집행기구가 있잖아요. 그 집행기구에 우리가 몇 명을 파견한다. 그리고 액수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더 규정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성 위원님이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잘 모르겠다.”, “불투명하다.” 그것에 대해 투명한 집행결의 조건.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금에 대해 일부 공공기관들이 하는 것은 중간중간 예산 점검을 해요. 예산 감사도 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계약조건, 정부 계약조건이 바뀐 내용들이 있잖아요.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용역사든 뭐든 계약금을 쫓아요. 그다음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줄 때 계약금이 원래 계획대로 그 항목에 온 전하게 쓰여졌는지를 점검하고 점검이 안 되었을 때는 계약금을 준 것도 회수하고 이것의 지원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규정에. 그 정도로 엄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진행할 때 1차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위원회에 결과보고를 해서 제대로 쓰였는지를 점검한 뒤에 2차 지원금을 준다. 처음에 지원금을 전액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정의결안을 주면 충분히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하고, 의결을 그냥 한다 안 한다로 가는 것보다는 위원회가 혁신적인 제안을 한다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수정의결이라는 안은요. 일단 토론 의견을 주십시오.

성기숙 위원 : 제가 위원회 운영방식 제안도 했지만 저희는 의결하는 권한도 갖지만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의견을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제약을 인위적으로 두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 상식으로 제가 했던 경험, 국가유산청이나 그런 위원회 등 아까 찬성, 반대, 기권이 5:4:2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그 안건은 그냥 무산된 것으로 오늘 논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정의결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 안전장정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죠. 오늘 안전 상정한 것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정교부 결정의 건이거든요. 수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무용계는 그렇습니다. 2~3천 지원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예술가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것은 지정사업 전국무용제뿐만 아니라 다건중복까지 같이 봐야 할 것이고 5건, 6건 주요 협회에서 수십억이 가는데 과연 공정하게 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다건중복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협회를 전제로 해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운영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제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용계의 의견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이런 식의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경험에 의한 행정적 법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의견을 주셨고요. 또 의견을 계속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기회는 한번만 주는 게 아니니까 걱정 마십시오.

왕치선 위원 :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다른 장르가 참 부럽네요.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저희는 무용 위원님께서 무용계의 얘기를 열정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가보다.”라고 하지만 실제 올라와 있는 스파프나 연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 합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들의 문제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용계의 문제에 대한 시정사항을 똑같이 연극이나 스파프에 적용해도 되는 것인지도 실은 약간 주저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유보를 정한 이유는 무용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나?” 제가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연극계의 얘기는 모르겠어요.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평하게 문제를 다 듣고 위원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런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를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만약 스파프나 연극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 둘은 결정

하고 무용계만 남겨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잘 모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 들었습니다.

문삼화 위원 : 연극계 얘기를 사실 많이 했는데 별로 기억에 남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연극제라고 해서 다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수정이 아니고 조건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건부 지정교부는 연극계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심사위원 선정이 협회장의 고유권한이구요. 이런 것도 저희도 바뀌면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너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대한무용협회가 문제가 많아서 얘기도 길어지고 문제가 복잡해지는데요. 한국연극협회는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저는 참 너무 안타깝고요. 대한무용협회가 너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잘 좀 하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임영옥 위원 : 지금 자꾸 무용협회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의로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하더라도 공공성과 원래의 취지를 잘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 그것을 지원하는 측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요구하자는 것이라서요.

김대현 위원 :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발언들은 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아니, 아까 회의 초반에 김상연 위원님이 한 말을 따라한 것인데요. 욕은 제가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부교부를 적극 찬성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수혜를 누가 받느냐에 초점을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이어서 해 주십시오.

차지언 위원 : 일단 너무 안타깝습니다. 무용계가 그렇게 암울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아니면 불안한 상황만 비춰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용계에서 협회는 물론이고 다른 단체들이 수혜를 받는 것 때문에 되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위원회에서 부정적인 면만 비춰지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단톡방에 성위원님께서 올리신 글을 읽고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 예고 사건을 올려주셨는데 저는 교육현장에 제자도 있고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은 동료들도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사실 교육자적 가치와 윤리의 문제고 학교의 행정적 문제인데요. 그들이 거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무용계 정책적인 문제로 거론된다면 그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생각할까?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무용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제관계에 있고 아주 훌륭한 동료관계에 있고 서로 보듬어줄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협회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에게 많은 일자리도 제공하고 협회 회원이 제가 알기로 4,000~5,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다른 무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용계가 너무 어두운 면만 강조되어 비춰지는 현실에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무용제를 누가 해도 괜찮습니다. 전국무용제는 특정 기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지역과 장르를 아우르는 무용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회 측에서 마련해준 자료처럼 ‘대체불가’라는 표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전국무용제는 한국무용, 발레, 현대를 아우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예선을 거쳐서 본선에 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3개를 아우르고 있고,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80개 정도가 되는 지회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선을 거쳐서 본선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대한무용협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무용제는 운영단체의 운영 능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예술인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의 개선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어떤 기관, 어떤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을 제시할 때, 특히 축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업지시서에 부합하는 것으로 당신들은 운영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 이게 지정된다면 세부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제시해도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열어두셨으면 합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고요. 예술위원회가 기획 주최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르면 저희들이 할 때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고 대신 지원에 대한 조건부분을 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지원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저렇게 하는 부분은 예술위 내의 자체 기획사업에 한정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 민간자율성을 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전반적인 국민 복리를 위해서 큰 대의 속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라는 지원조건을 주는 부분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나중에 다시 재지원을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게 맞지, 직접적으로 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각 장르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으니까 저희가 개선안을 이 자리에서 준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고요. 차라리 문삼화 위원님과 성기숙 위원님, 차치언 위원님께서 해당 장르의 문제들을 이렇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안을 정리해 주시면, 아까 문삼화 위원님 말씀처럼 급하다고 하시면 그것이 정리 되는대로 서면의결이라도 해서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개선안을 그 장르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대현 위원 :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논의 자체가 우려가 많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의 안전 자체는 협회사업의 타당성 여부지, 사업주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주체의 평가를 시작하려면 정말로 객관적 근거나 거기에 대한 안전이 올라왔을 때 이 협회는 문제가 있다 아니다를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개인적인 견해들 또는 주관적인 견해 중심으로 협회에 대한 낙인을 찍거나 방향성을 두게 되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어떤 민간단체가 지정교부를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절차적 문제가 나와야지, 실체적 판단을 객관적 근거 없이 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협·단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대표성이 있고 그 안에서 ‘대체불가’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존중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단체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민간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지 예술위원회가 위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협회 차원이나 해당 필드에서 자기들 자정의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다면 새로운 대표성이 있는 단체를 세운다는 식으로 해서 민간자율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지 내부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으로 대표성과 대체성이 있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브랜드성을 가지고 잘 진행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좀 찬성하는 편이고요. 다만, 문제가 뭐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절차적 문제나 외부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강제나 지침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고나 과업지시사항으로 해서, 아니면 차후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사업진행 수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강제보다는

권고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잘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저도 투표를 포기한 이유는 사실상 장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항상 자료를 갖고 판단하거든요. 김대현 위원님 말씀대로 저한테는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일은 쉽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단체의 ‘대체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저는 여기에 써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저는 증거만 갖고 보면, 44쪽에 보면 2025년 평가 결과가 A, A, B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뒤집어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세한 것들을 내놓아야 되고 청문회도 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가 되지는 않아요. 사무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규정이나 법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 위원회가 징벌을 하거나 조건을 거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최선이지 이것을 무산시키자는 것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전체가 달려들어서 몇 개월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또 이어서 의견을 주십시오.

진솔 위원 : 네. 저 같은 경우는 의결에 찬성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정 의결이 가능하고 조건부 지정교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듣고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서 거수로 진행하기에도 “이게 맞나?” 하면서 손을 들게 되었고요. 솔직히 말해서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완벽하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손을 들게 된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부담되는 형태로 와 닿기보다는 어쨌든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굉장히 가득한 위원님이 계실 거고 정보가 덜 와 닿는 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어떤 국제음악제에 대해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것을 여기에 와서 막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확 와 닿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맞닥뜨린 불안함이 뭔지? 이것을 오늘 의결을 했고 안 했고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불안하고 우리가 밖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까봐 불안한지? 이런 부분들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의결에, 저 같은 n분의 1 위원도 있으니까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구문모 위원님께서도 아까 투표를 안 하신 경우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맞습니다. 알겠고요. 또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토론 의견.

성기숙 위원 : 저도 구문모 위원님 생각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의 건에 우리 무용분야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장르의 생태계나 장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르를 맞춤형으로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했고요. 무용의 기준으로 연극까지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고요. 어떤 위원님은 협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객관적 팩트, 언론, 국감은 팩트잖아요. 그런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전국무용제를 벗어나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문화예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이 30년만에 개정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르코창작음악제, 저는 여기 지정사업뿐만 아니라 통으로 다 같이 우리가 통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아르코창작음악제는 왜 문예위에서 직접 수행하면서 그 많은 인건비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지? 비슷한 맥락의 축제인데요. 그것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스파프’ 왜 이것은 공공인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해야되는가? 그렇다면 연극, 무용도 예경에서 하면 더 장점이 많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용계에서는 다년지원으로 하다가 작년에 종료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발레축제라고요. 그런데 공모제로 전환돼서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인 평가, 평가모니터링에서 A, A, B라고 하셨는데 전국무용제가 아마 B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회에서 하는 또 다른 사업은 아마, 서영수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최하가 C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봐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오늘 ‘지정교부 결정의 건’만이 아니라 새로운 예술의 패러다임으로 가기 때문에 예술위가 관여된 것은 통합적으로 멀리, 깊게, 넓게 논의하는 지점이 심도있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토의를 개진해 줄 위원님이 계시면 마무리 토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지연 위원 : 전국무용제 평가에 대해서 성기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5년도 사업 정부시상 평가 결과에서 모두 A등급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전국무용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경에서 이것은 평가를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는 B 또는 C로, 작년에 B였나요? C였나요? B였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전담심의위원으로 성기숙 위원님이 참여를 하셨고 심의위원 2인도 성기숙 위원님이 추천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평가 결과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감에 대한 이야기를 성기숙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국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시청했구요. 거기에서도 심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기사를 찾아보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달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시정이 필요해서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심의위원 추천, 전담심의위원 추천은 정시공모 때 규정에 의거해서 공정하게 했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성기숙 위원이 2명을 추천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보면 심의위원 추천은 사무처와 비상임위원이 1~1.5배수로 동등하게 추천을 합니다. 심사위원 풀 중에서도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우선순위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결정되는 것이지 비상임위원인 무용 분야만 성기숙이 추천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에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경의 평가라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에 물어봤거든요. ○○경영평가라는 것은 그때 일시적으로 있었고 이것이 통용되는 객관적인 공정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전국무용제를 얘기하게 돼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여기까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의가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진솔 위원 : 하나만 여쭙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지정교부와 수정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팔걸이원칙 때문에 어렵다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 의견까지 해서 종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예술위원회에서 더 잘 하시겠지만 제 기억에는 조건부기부라는 게 있었어요.

임영욱 위원 : 그런데 그 조건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이냐에 따라서 팔길이 원칙에 위배되느냐가 달라서, 이 자리에서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조건부로 해도 좋을 수도 있는데요. 절차상 사무처에서, 그렇다면 오늘은 예술위의 지정 교부 결정의 건이니까 어떤 단서를 달아서 새롭게 안전상정을 해야 된다는 절차 원칙을 말씀드리는데요. 정창호 팀장님은 확인을 해 주세요. 무슨 회의라는 게 오늘 안전으로 상정한 건에 대해서 충실해야지 여기에 뭐가 붙어서 오늘 한다는 것은, 저는 오늘 자료 제공한 회의자료만 보고 이 자리에 와서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것이지 뭐가 붙어서 의사결정을 하라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고 부담스럽습니다.

김대현 위원 : 저희가 아까 소위원회 의사결정을 할 때 수정의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항의이신가요?

이범헌 위원장 : 그런 의견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임영욱 위원 : 수정으로 해서 네 번째 소위원회를 추가 수정했고요.

이범헌 위원장 : 수정안으로 의결했으니까요. 3개를 논의했다가 1개를 추가한 내용.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견 토론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혹시 사무처 의견이 있으면 해 주세요.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지금 김상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주체를 바꿀 수는 없다. 개선은 필요하니까 조건부 의결을 하고 단체의 사업 운영에 대한 혁신,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왕치선 위원님은 장르별로 잘 모르니까 장르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뭘 개선해야 되는지를 준비해 주시면 그것을 해당 단체한테 전달해서 거기에 대한 혁신계획을 받아서 개선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방식은 다른 것 같아요. 방식은 디테일에 있어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단체는 존중을 하자. 존중하는데 혁신, 운영에 대한 개선계획은 받자는 것으로 모여진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지금 류재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왕치선 위원님의 말씀은 연극만 오늘 처리하고 무용은 추후에 하자는 의견 아니었나요? 비상임위원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비상임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0조에 나와 있는 그 직무를 하는 것이지 특정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저희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그러면 해당 위원님들은 못 하시겠다고 지금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개선을 해야겠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유보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2개 사업이 어떻게 가야되는지, 이런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무처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협회한테 요구를 해서 혁신계획을 받아서 8월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의견을 청취했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연극은 저도 여러 이야기를 듣지만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일 걸리는 게 예경, 공공하고 민간단체가 하는 것은 한번쯤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연극은 오늘 가부를 하더라도 무용은 여러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논의도 필요하니까 이것은 유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분리를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의견이 있습니까? 더 없으시면 지금 정리된 내용들을.

차지언 위원 : 저는 지정지원으로 선정된 3개 축제가 저는 함께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현 위원 :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성기숙 위원님께서 수정의결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마지막에 수정의결을 제안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극만 그대로 가자는 것은 수정의결이거든요. 아까 수정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어떤 식으로든 태도를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의견조율은 합리적으로 해 주셨고요. 그러면 조금 더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여러 토론을 더 연장해도 어느 정도 압축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공감하고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토론의 마무리로 원안대로 의결안건에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고 이것을 그냥 의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의견이 신중하게 논의되고요. 또 수정의결 혹은 조건부 의결을 하기에는 아까 의견을 준 것처럼 조금 더 전문분야에서 의견 조율을 한 뒤에 서면결의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현재로서 그냥 다이렉트로 의결하자는 전제는 그렇게 많은 것보다는 대부분 조건부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서 전문장르 해당분야에서 더 예민한 문제들을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사항 혹은 사무처 본부장이나 사무처의 처장, 실무팀장의 의견도 종합해 보면 보완 혹은 조건부 내용에 대해 해당 주체의 소명을 듣고 실행하겠다는 결의를 전제로 해서 그것을 미리 의결하면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 지니까 이행에 대한 전제를 확인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한다면 절차적으로는 적어도 8월 중에 준비할 수 있겠다는 거고요. 일정으로 봐서 20일 정도로 한다면 8월 15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는데 8월 14일 정도면 2주 반 정도의 기간이 있어서 해당 분야, 특히 성기숙 위원님, 차지언 위원님 등 해당 분야에서 예민한 부분. 아까 서영수 위원님과 문삼화 위원님께서도 대한민국연극제에 대한 현안 문제도 이번에 조금 짚어서 간다면, 그리고 예경에 대한 문제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14일까지 제안을 주고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 해당 주체에 소명 답변과 이행각서 형태의 것들을 받고 그 결과에 대해서 회의자료로 보내서 서면결의를 한 관행대로 20일 전후에, 14일까지 보내면 검토할 시간이 되니까 위원회에 다 보내드리고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한다면 2주 소명을 받는 기간 그리고 1주는 받은 것에 대한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 업무과약을 두고 서면결의는 20일 전후로 잡고 갔으면 어떨까 하는 최종 압축안으로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정리를 해 드려 봅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의견과 위원님들의 존중할 뜻을 담아내는 방법의 최종 해법이 아닐까 하는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토론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보면 김상연 위원님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은데요. 김상연 위원님 의견을 봤을 때 저희가 만약 그런 식의 서면결의로 했을 때 이전까지 논의사항에서는 그분들이 만약 수락을 했다면 그것에 관련된 논의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제로 방금 말을 한 대로 또 적합성 여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김상연 위원님 말씀은 의결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합의사항이 된 것인데요. 이 합의사항을 다음 회의에서 바뀌면 또 순환논리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방지책이 있는지가 고민됩니다.

이범헌 위원장 :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전제되는 내용은 그 의견이 온 것에 대해서 위

위원회에서 일주일 정도 검토를 하시고요. 검토된 의견이 취합되고 취합된 의견에 대해서 전체 동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전제로 하는 의결안건에 부의한다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 안건부의 절차에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의결의 결의체가 되는 과정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더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그러면 오늘은 안건 결의를 안 하는 건가요?

이범헌 위원장 : 그러니까 조건부, 유보적으로 해서 일정을 아예 못 박는 것이죠. 해당 분야에 2주 동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해당 분야가 아니어도 위원회에 오늘 논의한 것을 서면으로 2주 정도의 기간 내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해당하는 소명기관에 소명시기, 저는 좀 빠르게 하려면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로 하면 어떨까? 논의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기간을 더 준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팩트만 가지고 정리하자면 압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압축된 것은 일주일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의 제안기간 그다음에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 해당 주체에 대한 소명, 답변을 듣고요. 그 답변 들은 내용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주일간 검토 정리를 하고 의결안건에 들어가는데요. 서면의결을 하는 결정 혹은 임시위원회를 하거나 30일에 할 걸 당겨도 되잖아요. 아니면 원래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두고 일주일이든 이주일이든 그 상황에서는 임시회의 소집날짜를 정하고 마쳐도 되겠고요. 그런 전체 결의를 정리하면 합리적인 위원회의 정체성이 맞지 않을까 하는 마무리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임영옥 위원 :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예술지원개선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요.

이범헌 위원장 : 거기에서 논의를 해 주시면 되죠.

임영옥 위원 :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 같아서 저희는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각 협회에서 그 제안을 받아서 수기하는 시간만 걸림이 없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이 굉장히 숙고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연극은 빼고요. 저는 연극은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무용은, 대한무용협회가 기존에 해오던 것을 계속 지속한다는 전제로 말씀입니까?

이범헌 위원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제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성기숙 위원 : 그러면 무용협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범헌 위원장 : 지금 보세요. 이 안에 대한 주체는 대한민국연극제를 주최하는 게 한국연극협회고요. 전국무용제를 주최하는 곳은 대한무용협회고요.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서울국제공연예술제를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주관처를 우리가 바꾸는 권한이 있는 회의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대한 가부 결정이고요. 다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현안이 현장에서 너무 많아서 위원님들이 토론해 주셨고요. 무한정 토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년 동안 논의가 있었으니까 압축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최 부분들을 바꾸자 안 바꾸자의 문제 논의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안이 있으면 그런 안까지 해서 위원회 일주일 검토기간에 결론을 내고요. 그 결론이 난 것

을 가지고 가부 결정을 한다. 그런데 이것에 지원하는데 대한무용협회가 아니라 다른 협회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시점이다.

성기숙 위원 : 맞는 말씀이고요. 1992년에 발족될 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주체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1998년에 민간이양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는 운영주체도 열어놓고 범무용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조직위원회 이야기도 여러 제안 중에 하나인데요. 대한민국발레축제가 범 무용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대한민국발레축제조직위원회로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대한무용협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복 다중지원도 5개, 6개가 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받고 수십억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쪽 해왔으니까 조금의 변화를 뒤서 실험적으로 범무용인들이 지역까지 지역무용제이니까 포괄해서 범무용인이 참여하는 조직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범현 위원장 : 의견의 취지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증장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의 문제보다는 그 정도로 현장을 반영하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토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만큼 헛되지 않게 방향을 잡고요. 그 대신 지금 의견을 주신 부분은 1년차, 2년차 계속 논의하고 어렵게 온 과정인데 더 압축해서 혁신안으로 그런 포괄적인 것을 하는, 지금 소위원회도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일은 하면서 보완 수정을 할 것. 그다음에는 중복지원 문제가 있다면 이런 형평성이 있고 이렇게 됐으니까 중복지원 심의 의결을 할 때는 여기는 이랬으니까 예산을 깎자. 아니면 중복지원이 되었으니까 이 항목은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는 스톱을 하자는 식의 의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다음 단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결론을 내면서 그래도 9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아가자는 취지입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위원장님, 저희가 다음주 월요일에 협회한테 혁신계획, 제도개선 운영계획을 작성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회의 자료에 각 협회에서 낸 3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답아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다음 주 월요일은 촉박하니까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해당 장르의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숙고한 의견. 이미 의견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압축적으로 해서 제시해 주시고요. 이참에 연극 부분도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하자는 겁니다. 예경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꼭 해당 장르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 기간이 적어도 일주일만 필요하니까 논의가 충분히 돼서 월요일에 당장 하기에는 어려울 듯 하고요. 일주일이라는 기준으로 타임스케줄 용어를 통일하기로 하고요. 일주일만 받고요. 그다음에 소명을 일주일 받고요. 그다음에 일주일 위원회에서 최종 취합된 것을 검토 결의하고 의결해서 조건부로 다는 항목들을 정확히 체크하고요. 그것에 대한 전제로 의결을 한다면, 만약 그렇게 했는데도 ‘부’가 되면 부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결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가결이 되면 그 조건부에 대한 실행 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혹은 징벌의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를 달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법률 기준치, 가치 기준치에 부합하는 정도. 우리가 무슨 사법기관이 하듯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 권고. 그 대신 권고한 안을 소홀하게 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전제가 확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일정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서영수 위원 : 성기숙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자꾸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피로하거든요. 무슨 말이나 하면, “전국무용제를 대한무용협회에서 하지 마라.”, “다른 단체로 바꿔라.” 이런 권고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월권입니다. 월권. 민간단체가 하는 거

잖아요. 민간단체가 하는데, 전국무용제를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해 왔는데 “너희는 문제가 있으니까 재단에서 해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얘기를 하시면 힘들어지는 거죠.

성기숙 위원 : 무용계에서 지난 2년간 토론회를 했을 때 운영주체, 지원방식, 지원금액을 개선하겠다고 정병국 위원장님 시절부터 해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제가 대한무용협회가 하면서 개선안을 내라는 거잖아요.

이범현 위원장 : 우선 안전에 부의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성기숙 위원 : 위원님 지정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예술계에서 볼 때 “왜 이것만 지정하느냐?”, “다 공모로 해라.” 이게 첫 번째 제안입니다. 전국무용제를 ‘대체불가’라고 했는데 누구의 판단입니까?

김상연 위원 : 전국단위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성기숙 위원 :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지역문화재단, 이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 비용을 공공으로 지역문화재단으로 해서 집행하게 하면 성과가 공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무용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거듭하는 이유가, 저는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서영수 위원 : 그러니까 자꾸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되니까요.

성기숙 위원 :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서영수 위원 : 그래서 지금 개선하자고 했잖아요.

이범현 위원장 : 개선안을 적용할 수 있게.

김대현 위원 : 제가 지금 한 가지 궁금한 게, 전국무용제와 대한민국연극제 브랜드가 공동으로 협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창설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브랜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는 서울국제도서전을 지금의 대한출판협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도 강요를 못 해요. 만약 전국무용제를 안 한다면 이름을 바꾸거나 별개로, 그러니까 이 단체를 임의로 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기숙 위원 : 아니 1998년에도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논의를 해 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책임을 우리가 다 져야 하고요. 왜냐하면 운영주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지역재단으로 가든지 범무용계 조직위원회를 꾸리든지, 대체불가라고 하셨으니까 어떤 단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서영수 위원 : 그러면 무용협회가 동의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동의하지 않는 한 우리가 바꿀 수는 없죠.

성기숙 위원 : 우리가 바꾸고 안 바꾸고를 논의해 보자는 거예요.

임영옥 위원 : 대한민국공연예술제라는 것은 지원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심의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틀 안에서 논의하는 거죠.

성기숙 위원 : 공모를 하면 되죠.

서영수 위원 : 전국무용제를 대한무용협회 말고 다른 단체가 신청해서 오도록 하세요.

성기숙 위원 : 공모를 하면 신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삼화 위원 : 정말 죄송한데요. 성기숙 위원님,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서요.

이범현 위원장 : 충분히 들었습니다. 토론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론을 하시면 발언하지 않아도 공감하고 판단이 서는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안으로 압축하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 이상의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의결의 가부를 물어서 전제되는 것들이 해결되지도 않는 조건부 의견. 혹은 안 되었을 때 의견을 종합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방안으로 의결의 절차를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래서 지금 현재의 마지막 의견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기숙 위원 : 다들 동의를 하면 가겠지만 이 말씀은 남기고 싶습니다. 사무처에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2028년 인천광역시 문제제기 문건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서요.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김상연 위원 : 여기 답변서에 있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내용들이 있는데 절차가 있으니까요. 의결이 된다면 조건부 제안이나 수정보완, 권고사항을 취합할 때 그 내용도 같이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 금요일이 끼어있기 때문에 나주로 내려가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7시 30분 차가 거의 막차고요.

이범현 위원장 :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마무리 정리가 돼서 나주로 이동해야 하는 사무처 임직원은 중간에 이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의논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절차를 하겠습니다. 원안의결안에 가부를 묻고자 하는데 토론을 통해서 아까 소위원회 3개 안이었을 때 필요로 하는 1개 안을 추가해서 예술생태계 기반 구축 소위원회를 수정해서 채택한 것처럼 지금 현재는 수정, 보완, 권고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의 기간을 소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당 장르 혹은 타 장르도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마무리, 지금까지 논의된 것의 압축적 의견 제시와 의견 제시에 대한 소명기간을 일주일씩 두고 취합되어진 내용들의 심의 검토를 일주일간 위원회에서 하고요. 서류검토를 한 후에 바로 결의에 들어가는 절차로 가는 해법 외에는 당장 이 안건을 가지고 동의 의결에 붙이는 부분은 어렵다. 그러면 의안으로 안건부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의결안건의 최종 결론은 유보적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일주일간 해당 소위원회를 하고 해당 장르 그리고 전 위원님들의 토론 내용들을 취합, 압축, 결론 내어지는 조건을 사무처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미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가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해당 주최 측에, 이것은 무용뿐만 아닙니다. 연극, 예술경영지원센터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명 일주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행계획 포함. 이미 사업계획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위원회에서 의견을 최우선 존중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듣고요. 답변이 소홀하면 부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전체 조건을 가지고 가부를 그때 의결한다. 그래서 서면결의 시기를 일주일씩 보면 대략 8월 3주차 정도에 사무처에서 합리적인 시기를 정해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을 그대로 안전에 부의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의견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이 사무처에서 이렇게 행사 운영주체한테 기획안을 받고 이것을 검토해서 개선사항을 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당락을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공모제 비슷한 것인데요.

이범헌 위원장 : 가부 결정이죠.

성기숙 위원 : 네. 가부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지정사업 자체가 주된 사례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지정을 하는 대신 그만큼 공적 책임성 영역에서 필요한 교부조건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가는 것은 명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공모에서 한 내용과 좀 다릅니다. 지정교부라는 개념의 정책적 가치니까 제한도 둘 수가 있고 조건부도 둘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민원이 있으니까 수정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하면 위원회의 기능이 아니니까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7기, 8기 때도 국회지정사업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정사업이라고 그냥 교부하지는 않고 위원회에 해당 단체를 참석시켜 사업계획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피드백을 드리고 교부가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일반공모 사업도.

성기숙 위원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 제약 때문에 논의가 축소되거나 발언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범헌 위원장 : 충분히 하세요. 제가 차관님 미팅도 미뤘는데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께서 나주 직원분들은 가셔도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시간이 촉박하신 분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리고 정말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이 위원님들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언제든지 개인 일정으로 이석을 하셔도 되고요. 다만, 진행된 논의가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위임한다는 전제로 해 주시고요.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벌써 7시가 되어 가는데요. 그런 관점들을 관철해서 이제는 이렇게 요약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성기숙 위원 : 죄송한데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무용 장르잖아요. 말씀대로 여러 말들이 많고요. 그러면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정 협회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안이 왔을 때 가부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예를 들어 전국무용제 비전과 철학에 너무 안 맞고 운영의 역량에 대해서 함량 미달이라고 보면 그때 가서 운영주체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범헌 위원장 : 전체 위원회의 가부 결정이니까요. 위원님들의 뜻입니다.

문삼화 위원 : 아니죠. 운영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부가 되는 거죠.

이범헌 위원장 : 사업이 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다음 논의로 가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그러시죠. 그때 가서 사업의 존재, 지속 내지는 지원금 조절 등 재논의가 되는 거죠.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결에 따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말 9기 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9기 위원장으로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로서도 누구하나 소중하지 않은 상황이 없잖아요. 모두 담아내는 방향의 의결안으로 압축하는 것이 이 내용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한분 한분. 혹은 오래 누적되었던 누적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담는 기회를 의결안건으로 마지막 절차라고 인지해 주시고요. 다른 문제 제기는 그다음에 중장기 전략과 1차년도, 2차년도를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가자는 뜻으로 하고요. 이 순서에 맞춰서 결의하는 것에 제 3의 부연이 없기를 요청드리고 안건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안된 안에 대하여 모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삼청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결이후 다른 위원회의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지켜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이 의안에 대해서는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단위를 거쳐서 진행하는 내용. 그리고 소위원회 중심으로 전체위원회 의결. 그리고 장르위원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당 주체의 소명과 이행 결의서를 받고요. 그에 따른 가부의 안건부를 일주일간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서면결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류재수 예술지원2본부장 :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일정과 직원들 업무여건을 봐서 그것은 8월 전체회의에 올리든 일정은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탄력적입니다. 일주일이라고 해서 딱 끊을 수 없으니까요. 그 연장선상에서 가면 거의 8월 말까지 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게 있어요. 다만, 물리적으로 8월을 넘기면 위원장부터 업무태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일대로 처리하면서 급하게 처리할 게 있다면 임시위원회라도 그때그때 소집하겠습니다. 1년, 2년차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소위원회 가동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중장기전략도 잡을 수 있고 그것의 확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기숙 위원 : 덧붙여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전체 의견에 따라가는 건데요. 이 제안안과 수정사항을 주려면 전국무용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한 다음에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범헌 위원장 : 최소 의견에 대해서 사무처에 요청하시면 정보제공에 대한 부분을 행정절차에 따라 최대한 협조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기존에 냈을 텐데요. 사업계획과 사후평가.

성기숙 위원 : 앞으로 3년치는 받았는데요.

이범헌 위원장 : 전년도 한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성기숙 위원 : 저는 5년치 정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우신가요?

이범헌 위원장 : 제가 볼 때 5년치, 3년치, 데이터는 3년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사무의 합리성을 위해서 3년 정도 어떠세요?

성기숙 위원 : 그리고 제가 금액 때문에 정창호 팀장님한테 우리는 6억 지정사업으로 줬는데 지자체마다 편차가 있잖아요. 매칭한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셨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그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한 게 아니라 서울문화투데이 측에서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아시죠?

성기숙 위원 : 아니요. 제가 부탁했어요. 정창호 팀장님 그건 제가 지지난주인가 부탁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달라고 했으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지난주에 부탁을 했어요.

이범현 위원장 : 각각의 대응으로 놓고 매칭비율은 사실상 저희 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주최측의 역량이나 혹은 지자체의 매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현안이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는 있으면 서치를 하도록 하세요.

김대현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가결된 안건 이후에는 다음 안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이 나오는 것은 진행에 있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맞습니다. 충분히 들었고요. 자료 요청에 대한 참고니까 그것도 수용하시고요. 지금 정말 좋은 방향의 의견을 압축해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기숙 위원님께서서는 흔쾌하지 않아도 가장 성기숙 위원님 의견이나 현장의 반영, 객관적인 위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유보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야라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 보 고 사 항

이범현 위원장 : 이제 보고사항을 아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2026년도 공연예술대관료지원 1차 공모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어서 음악전통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네. 공연예술대관료지원 1차 공모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지체되고 줌으로 참관하고 있는 직원도 많아서 짧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에 대한 계획은 위원님들이 오시기 전인 3월 말 회의에서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요 전반이나 추진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안건으로 상정했고요.

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은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비는 51억 6,8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내용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대관료와 부대시설 사용료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신청 주체별 연간 1건으로 제한하고 있고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기초예술분야 공연예술단체 그리고 예술인으로 단체와 개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지원신청대상은 대상기간 중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기초 공연예술 분야 대관 공연에 한하고 있고, 이번 1차 공모는 1월에서 4월까지 진행된 공연입니다.

본 사업의 특성은 다른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 사업으로는 저희 기관의 연수단원 지원사업과 복지재단의 예술활동준비금만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공공 지원을 받은 사업들은 모두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지원 제외 대상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접수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었고 전체 45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황은 총괄표로 같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운영은 한국소극장협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통해서 행정검토만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후에 나와 있는 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심의기준에 신청사업의 지원 적격성 그리고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공지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신청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누락 없이 내었는지가 행정검토의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 결과는 전체 454건 중에 298건이 선정되었고요. 행정결격 사유로는 필수 제출서류 누락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현황을 보시면 분야별 선정 현황은 음악 분야가 251건으로 68.1%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분야별 평균 지원액을 보시면 아무래도 음악 분야는 단발적으로 하루짜리 공연이 많은데 비해 연극, 뮤지컬 분야는 장기간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서 683만 6,000원으로 분야별 평균지원액의 연극, 뮤지컬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 결과 발표는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고 2차 공모는 8월까지 진행된 공연에 한해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수고했습니다. 의견을 주십시오.

진술 위원 : 음악 부분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음악이 좀 많이 받는 사업이잖아요. 잘 알고 있는데요. 음악에서 26번 항목을 보시면 ◆◆◆씨가 트롬본으로 등록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167번을 보시면 같은 ◆◆◆ 트롬본 독주회라고 되어 있는데 대표자만 다르고 경기권입니다. 항목이 같은 사람이 같은 트롬본 독주회를 하는 항목인데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동일인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제출 자료와 소극장협회에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확인이 어려워요.

진술 위원 : 만약 이게 같은 부분이라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아는 부분이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72번과 173번의 경우에도 같은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같은 사람인지는 확인할 수 없어서요.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네. 이것도 체크하겠습니다.

진술 위원 : 왜냐하면 음악인들이 이걸로 귀국 독주회를 하시기 때문에 예민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9번 같은 경우 부적격으로 중복수혜가 되어 있는데요. 신청인 ‘▲▲▲▲’ ○○○ ‘◇◇◇&◇◇◇ ◇◇◇◇◇ ◇◇◇’라는 것은 저희 내부적 이슈로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IP쪽으로 아마 앞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도 승격하면서 이 부분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지원해 주곤했는데 앞으로는 심의위원들한테 중복수혜 때문이 아니라 IP적인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공연은, 심지어 상업적인 공연은 지원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브리 작곡가인 히사이시 조도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기사를 내서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음악 저작권은 해결했으나 편곡권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콘서트는 실제로 공식 타이틀이 붙고 합니다. 제가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중복수혜 때문이 아니라 ◇◇◇&◇◇◇ ◇◇◇◇◇ ◇◇◇’라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도 제가 음악전통팀에 와서 같은 지점을 저도 발견했는데요. IP기반의 공연들이 선정된 건이 꽤 있는데요. 사실 3월에 의결을 받고 이 기준으로 사실 상 이번연도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에는 선정되었는데 2차에 같은 기준의 공연이 선정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할 때는 제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술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자신 있게 이해관계 충돌도 없고요. 그냥 그분들도 다 알면서 그냥 피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339번 같은 경우도 ◆◆◆◆에서 ‘◆◆◆◆ 콘서트’ 이것도 편곡권을 허가 받지 않은 공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아르코가 국가기관인 점에서 지원금이라는 것을 준법하지 않은 IP콘서트의 경우에는 조심하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아주 중요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것은 사무행정 또 지원정책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대비하고 검토를 하시도록, 사무처에서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옥 위원 : 73페이지에 다원예술 선정단체들과 작품을 보면 가족뮤지컬 <■■■■■>입니다. 이것은 사실 연극/뮤지컬에 해당하는 장르고요. 저도 찾아보기는 했는데 틀림없어 보입니다.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분야는 지원신청 단체가 선택한 장르라서 저희가 임의로 변경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영옥 위원 : 그래서 우리 기준에 보면 지원단체와 사업의 지원자격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다원예술에 적격하다고 판단을 한 거라면, 저희는 다원예술 위원도 없고 심의위원도 위원님들이 대체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대한 미비함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의 성격도 알고 있어서 마땅히 지원이 되는 게 옳다고 생각되는데요. 나머지 3개 팀 중에 2개 팀도 뮤지컬이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아마 우리 다원예술에 대한 개념이 소극장협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인가? 어떻게 개선이 될까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지금 다원예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가 유추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저희가 장르별 배정액이 있지는 않은데요. 다원예술로 했을 경우 선정에 있어 조금 더 우대되는 게 있나, 선정률이 높다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소극장협회와 저희가 논의를 했을 때는 굳이 이 사업을 운영할 때 다원예술 분야를 선택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이러한 불필요한 논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신청부분은 공연예술 분야로 한정해서 선택하도록 개선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다원예술보다는 다른 장르, 공연예술이 주가 되지는 않지만 시극이라든지 문학과 결합된 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임영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자체는 다원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전달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연예술이 주가 아니지만 공연예술 성격을 가진 부분들은 보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두 분 위원님의 말씀도 현장에 직접 지원하는 항목들이니까 더 신중하게 접수해서 그런 내용들을, 현장까지 파악하고 파악된 내용들에 대해서 대안도 구체적으로 한 뒤에 다시 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의견이 중요합니다.

임영옥 위원 : 사소하지만 “나는 여기 다원에서 났어.”라는 말들이 나오고 쌓일 거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다원이야?”, “너 다원으로 났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회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이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다 소극장협회에서 다 선정하나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네. 행정검토를 소극장협회에서 진행하고 소극장협회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만 저희 사무처와 공유해서 재검토하는 건들이 있습니다.

문삼화 위원 : 지금 무용 공연이 너무 없다는 게 의아하고요. 홍보가 안 된 것인지? 그리고 연극 분야는 사실 지원금을 아무 곳에서도 못 받은 단체들이 그나마 대관료 지원으로 숨구멍이 트이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완전 상업극은 아니더라도 한 달 이상 공연을 하고, 그러니까 절대 지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회전문 관객이라고 불리는 그런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들은 사실 지원금을 안 주죠. 그런데 그런 단체들이 은근슬쩍 대관료지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액수가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건 그만큼 길게 공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혹시 답변사항이 있어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일단 포함해서 소극장협회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렇게 면밀히 해 주시고요.

성기숙 위원 :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좋은 지원사업 같은데 무용은 1건 지원했는데 이것도 서류 결격으로 미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다른 데는 300건, 400건인데 혹시 해당 부서에서는 무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는 어쨌든 지원률이 저조했는데, 이번 회차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무용과 전통예술 분야는 어느 1건이라도 재단이든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지원을 다른 쪽에서 받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서 지원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용 분야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대관료 증빙서류를 누락해서 행정결격으로 분류가 된 상태입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무용과 전통은 사실 공공지원이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는 반증이고 공공지원 영역에서 음악 쪽은 개인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다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성기숙 위원 : 서울과 경기도 압도적입니다. 지역은 또 없는데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범헌 위원장 : 홍보뿐만 아니라 사실상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근본적으로 지역에서는, 특히 무용 장르 같은 경우에는 지역 무용예술가의 기반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더더욱 인구소멸의 영향도 직접적이고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요. 그런 과정에서도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활발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소극장협회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역단체의 신청률이나 선정률이 낮은 것은 지역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하고 있는 단체들이야말로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자체 지원의 경우가 많아서 저희 중복수혜를 제한하고 있는 게 너무 보수적이라는 의견이 소극장협회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본적인 추진방향으로 의결을 받았지만 내년에 추진방향을 마련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더불어서 중복수혜 제한에 대해서 창·제작 지원이 아니면 일부는 완화해서 지역단

체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의견을 청취하신 것처럼 감안하셔서 특별한 장르 분야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 기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수 위원 : 질문인데요. 공연을 하고 나서 신청하는 거죠?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네.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영수 위원 : 대관료지원사업인데 공연장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지금 공연장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단체한테 약간 보완적으로 저희가 전액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영수 위원 : 이 단체들이 어느 극장에서, 어느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대관료지원사업인데 그게 없으니까요. 단체 지원하는 건데요.

김지영 음악전통팀장 : 네. 단체지원도 맞고 증빙자료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누락 때문에 행정 결격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서영수 위원 : 대관료지원사업이라서 공연장이 명시되면 좋을 텐데요.

문삼화 위원 :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서영수 위원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액수가 어느 극장에서 하면 이렇게 나왔다는 타당성이 바로 확인되는데 극장이 없다보니까요. 지금 편차가 크거든요. 어떤 것은 100만 원, 어떤 것은 1,000만 원이니까요. 그 말씀이신거죠?

서영수 위원 : 네.

이범헌 위원장 : 그리고 이 정도로 조율이 정리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 안에 접수해도 되겠습니까? 동의 있습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해 주시고 삼청하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재청과 삼청을 동시에 하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안건은 접수만 하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므로 본 안건은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정말 감사하고요.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민한 사항들을 토의를 통해서 아쉬운 부

분은 있지만 최대한 원만한 방향의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조강주 노조비대위원 : 위원장님, 노동조합에서 의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처음 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노동조합 비대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비대위원 조강주라고 합니다. 발언 요청을 드린 것은 오늘 의사진행 중에 직원들의 업무부담 그러니까 조합원의 권익을 해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어서 정중하게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편안하게 의견을 개진해 주세요.

조강주 노조비대위원 : 네. 오늘 회의를 숙의하는 것은 좋습니다. 숙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숙의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좋은데요. 중간에 발언에서 무제한적으로 토론을 하자는 발언도 있었고 시간제한을 두지 말자는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회의를 진행하는 역량 부분입니다. 아까 중간에 이석해도 좋다고 배려를 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전혀 대안이 안 됩니다.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소위원회도 4개가 운영될 것이고 소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실 겁니다. 직원들이 다 참관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직원들에게도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이석하는 것은 전혀 대안이 안 됩니다. 오히려 안전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시간 안에 결론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논의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싶으니까 먼저 가도 좋아.”라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전혀 대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회의진행이 중언부언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얘기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위원님의 관심사가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회의가 길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이사회의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네. 지금 노동조합이 비대위 체제이기는 하지만 정상체제나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가동이 되고 그런 만큼 지금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기존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회의체에서 모든 의결을 하다 보니까, 특히 소위원회가 개시되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회의의 완급을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여러사안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서 지난 몇 차례 하지 않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현안에 따라서 완급이 되고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되면 위원장의 집행, 사무, 진행에 대한 그리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법률적 권한 기준을 아낌없이 행사하게 될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기 위한 논의를 몇 차례 더 하겠지만 이것은 중요한 만큼 비대위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하고 형식적이지만 정리되는 부분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죠.

성기숙 위원 : 맥락상 제게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짧게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네. 조강주 비대위 대표시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맥락과 관련해서요. 지난 2026년 3월 전체회의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사실 줌으로 전

체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잘 안 보여서 여쭙봤더니 조강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전담심의제 관련해서 사무처 직원들로 구성된 전담심의관에 대한 이해충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끄라고 하시고 제 기억에 말미에 말씀하시면서 제가 근거 없이 사무처 직원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면서 경고를 주셨거든요.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고요. 제가 최근에도 그렇고 다시 한번 속기록도 확인을 했어요. 근거 없이 사무처 직원을 제가 비판한 것처럼 하셨는데요. 분명 근거가 있는 발언이었다는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무용협회 젊은 안무자 창작 공연이었고 사무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심의관의 배우자가 운영위원으로 팸플릿에 명기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류재수 본부장님, 정창호 팀장님이 같이 공연을 봐서 제가 팸플릿을 보여주면서 전담심의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향후 모니터링을 할 때는 제척이나 이해충돌에 걸리니까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그 부분은 중복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깐 요약해서 해 주세요.

성기숙 위원 : 평가모니터링까지 해서 점수가 합산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거가 있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맞아요.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저도 통감을 하거든요. 앞으로 저도 조율을 해야 되겠다는,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비상임위원으로 무용계의 대표성을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불편하신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무용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 9기 위원회의 역할과 의무가 뭔가?

이범현 위원장 :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기숙 위원 : 민간자율기구로서 법 개정 때도 저는 제 의견을 낼 생각이 있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그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체의 효율을 위해서 의견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회의를 하는 이유는 그런 것을 담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삼중 강조하지 않아도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회의체 용어라는 게 신중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데요. 지금 얘기하시면서도 노동조합 대표로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할 때 제가 아무리 길게 얘기를 하거나 논점을 벗어난 것들이 있어도 최대한 요약해서 당부는 드리지만 마이크를 끈 적이 없어요. 그런 용어를 함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이 아니셨습니다. 전임 8기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범현 위원장 :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정확히 하세요. 9기 위원회는 어떤 경우에도, 사무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제가 안 하고 있고요. 오늘 회의의 논점도 저의 철학과 관점에 의해서 그리고 9기 위원회의 방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오후 8시 4분입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저는 9기 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을 위한 그리고 문화예술정책 지원기구의 소명감 외에 무슨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기숙 위원님이 부언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제약적 컨트롤을, 회의라는 핑계로 해서 끊은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회의 주최에 대한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완급을 조절할 예정이라는 것을 예고해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위원회가 토론만 하다가 날을 썰 일은, 우리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그래서 오늘 의결안건도 그런 의결안건이 도출된 것이고요. 그것을 무시할 것 같으면 강행군을 해서 의결하면 됩니다. 제가 그런 것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장르 간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헤아리고 잘

해 오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사무적인 현안의 의견이 있을 때 너무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상호 의견을 토론했으면 풀어질 수 있고 오해도 정리가 된다고 보여지니까요. 다만, 효율적인 회의라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너무나 많이 현장에서 리더십을 갖고 하시니까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내용에 대한 보고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사무처장의 제안 의견도 있고요.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서 사무처장은 8월 위원회 전체회의, 8월 28일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인데요. 이것은 정기회의 날짜를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결의라도 빠르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되 안 되면 여기에서 최종 합의가 될 것이고요. 이때 의결안에 들어갈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8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8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 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는 것을 사무처장의 확인을 생략하고 문건으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차지언 위원 : 기록에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일단 요청사항이 있어서 수정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까 심의위원 관련 얘기를 하면서 객관성을 의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위원회 측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의 중에 성기숙 위원님께서 제게 교정 사항으로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수락하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드릴 텐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무용협회에 대해서 주로 동일 인물들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기숙 위원님께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교정적인 차원에서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주로 동일매체에서 지적사항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원 대리님께 “교정이 가능합니까?”라고 여쭙보니까 교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범헌 위원장 : 그것은 정식 회의에서 낸 사안이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고, 회의록에 기록된 것을 수정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수정 보완으로 접수를 하면 됩니다.

차지언 위원 : 저의 실수를 인정하고 매체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근데 그 부분, 그 후에, 우리 차 위원님 말씀 후에 제가 발언을 했잖아요. 제 발언도 녹취가 되었을 텐데요. 그 발언. 아까 말씀하신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부분.

차지언 위원 : 죄송한데 비판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고요. 그냥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이 부분은 더 논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합리적으로 회의 운영을 하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4월 27일자로 9기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임명되었고요. 제가 아까 발언한 것은 2026년 3월 전체회의를 언급한 것이라서 마이크를 끈 것은 전임 8기 위원장님의 얘가지 우리 위원장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네. 그건 확인을 하는데요. 용어를 쓸 때는 그렇게 팩트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시절이다.” 또는 “현 이범헌 위원장 시절이다.”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를 9기 위원회에서 비전있게 잘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회의체로 가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은 있지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성과가 있는 위원회는 쉽지 않다고 저는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용은 모두 정리가 되어졌고요.

6. 폐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9기 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모든 회의체를 참관하는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한, 그리고 또 국민 문화 향유에 이르기까지 복지 그리고 문화강국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결의가 더 다져집니다. 더욱더 좋은 8월을 맞이하시고 우리 회의체에 대한 모든 부분은 향후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4차 위원회 전체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14분 회의 종료)

